

우리나라 政府開發援助의 國別差別化政策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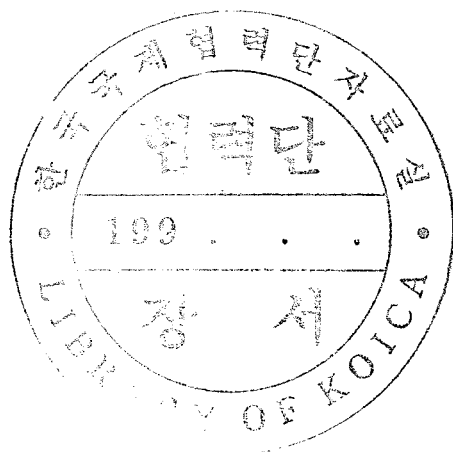
尹 海 鎮

1992. 10



KOICA

한국국제협력단



序 言

우리나라의 國際協力事業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어 오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經濟力이 크게 伸長되면서 後發開發國에 대한 國際協力要求가 증대되자 체계적인 協力政策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政府는 1991년 4월에 韓國國際協力團을 창설하였습니다. 協力團의 창설은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協力事業을 추진하기 위한 土臺를 의미하며 韓國國際協力史의 획기적인 轉機가 될 것입니다.

國際協力事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서는 먼저 확고한 協力理念을 설정하고 理念具現을 위한 具體的 政策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 開發國의 범주에 속하여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先進國의 기존 援助政策을 일방적으로 踏襲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韓國型 國際協力模型을 開發하여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推進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當協力團이 시행하고 있는 政府開發援助의 합리적인 國別配分에 대한 基準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本研究는 우리나라의 政府開發援助의 국별배분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協力目標과 理念을 설정하였고 協力方向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효율적 援助配分案을 제시하였습니다. 本研究가 우리나라의 원조정책에 一助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研究에 논의된 일체의 見解는 當協力團 尹海鎮博士 個人의 提案으로 協力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1992. 10

總裁 李 楠 基
韓國國際協力團

目 次

I. 序 論	1
II. 國際協力の 理念과 現實	9
1. 國際協力の 理念과 動機	11
가. 政治優位追求型 援助	11
나. 經濟利益追求型 援助	12
다. 人道主義追求型 援助	14
2. 主要 援助國의 援助配分	14
가. DAC會員國의 援助配分 總括	14
나. 主要 援助國의 配分政策	17
III. 國際協力の 意味와 우리나라의 協力方向	25
1. 國際協力の 意味	27
2. 우리나라의 援助方向과 理念	32
3. 配分原則의 定立	37
IV. 配分の 基準과 模型	45
1. 既存研究의 考察	47
가. 國外研究	47
나. 國內研究	50

2. 協力動機別 基準과 要因	51
가. 交流聯關基準	52
나. 人道主義基準	53
다. 外交基準	54
3. 基準과 要因의 選定	54
가. 選定の 問題點과 方向	54
나. 配分基準과 要因의 選定	58
다. 說明變數의 選定	60
4. 配分模型	64
V. 重點國家選定과 援助配分	67
1. 選定方法 및 節次	69
가. 選定對象國家	69
나. 資料 및 等級	69
다. 基準과 要因의 加重值 附與	70
라. 選定範圍	72
2. 重點國家의 選定	72
가. 經濟基準	72
나. 一般配分基準	74
다. BHN 基準	76
라. 特別配分基準	79
3. 國別援助配分	81
VI. 國別 重點支援 方向	87

1. 發展段階別 國家區分	89
가. 國家區分の 基準	89
나. 發展段階別 重點協力國의 區分	91
2. 重點支援方向	94
 VII. 結論 및 要約	101
 〈參考文獻〉	106
 〈附 錄-表〉	108

表 目 次

〈表 I -1〉 우리나라의 國際協力 沿革	5
〈表 II -1〉 DAC회원국의 地域別 援助配分	15
〈表 II -2〉 最貧國에 對한 DAC 회원국의 援助	17
〈表 II -3〉 호주의 援助配分政策	19
〈表 II -4〉 캐나다의 援助配分政策	20
〈表 II -5〉 韓國의 主要 援助手段別 兩者間援助 地域配分	23
〈表 IV -1〉 說明變數와 加重值	61
〈表 V -1〉 一般配分基準의 加重值 附與	71
〈表 V -2〉 BHN 基準의 加重值 附與	72
〈表 V -3〉 主要 經濟協力 對象國家	74
〈表 V -4〉 一般配分基準 重點協力國家	75
〈表 V -5〉 BHN 基準 援助對象國家(I)	77
〈表 V -6〉 BHN 基準 援助對象國家(II)	78
〈表 V -7〉 特別基準 援助對象國家	80
〈表 V -8〉 國家別 援助配分案	84
〈表 VI -1〉 發展段階別 開途國 區分의 基準	92
〈表 VI -2〉 重點國家그룹 및 發展段階別 國家區分	94
〈表 VI -3〉 重點國家그룹 및 發展段階別 支援方案	96

圖 目 次

〈圖 IV -1〉 配分基準의 構成	59
--------------------------	----

附 錄 目 次

〈附錄 表 1-1〉 호주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108
〈附錄 表 1-2〉 캐나다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109
〈附錄 表 1-3〉 프랑스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110
〈附錄 表 1-4〉 독일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111
〈附錄 表 1-5〉 일본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112
〈附錄 表 1-6〉 미국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113
〈附錄 表 1-7〉 영국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114
〈附錄 表 1-8〉 총 DAC회원국의 國家別配分	115
〈附錄 表 2-1〉協力類型別 基準과 變數	116
〈附錄 表 3-1〉交流基準의 要素에 대한 等級	119
〈附錄 表 3-2〉BHN基準의 要素에 대한 等級	122

I. 序

論

I. 序 論

世界秩序는 戰後 30여년간 美國과 舊蘇聯이 각각 자유주의 陣營과 사회주의 陣營을 주도하는 兩極體制로 편성되어 왔고 對開途國 國際協力도 兩陣營의 영역확대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패전국이었던 일본과 독일이 經濟的 復興을 이룩하여 國際社會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고 EC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위시한 신흥공업국도 탄생됨에 따라 미국 중심체제에서 다극화체제로 전환되고, 사회주의 진영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스스로 붕괴하여 세계질서는 武力이 아닌 經濟力에 의하여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에 의한 自由交易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역내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國際分業體制도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이되고 있다. 세계질서가 이렇게 多極化, 交易自由化속의 블록化, 그리고 水平的 分業化에 의하여 經濟力을 중심으로 재편성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아가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시작된 순차적 5개년 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 추진으로 현재는 선발개도국의 단계를 넘어 중진국 내지 선진국권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180여개국중 인구는 22위, GNP는 15위, 1인당 GNP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33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미 IMF 8조국과 GATT 11조국으로 편성되었으며, 1991년에는 숙원이던 UN가입을 달성하였고 '90년대 중반에는 OECD가입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결과로 국제사회에

서는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政府開發援助(이하 원조)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天然資源 및 資本貧國으로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경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만이 향후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정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원조의 규모는 향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경제여건만을 고려하여 對開途國 協力事業에의 참여요구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受援國에서 供與國으로의 변신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면서 다같이 번영하는 사회건설이라는 인류애적 사업에 동참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질서 개편과정에서 장기적으로 國益을 증대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受容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의 國際協力事業은 1963년 美國 AID(국제개발청)의 대개도국 원조계획과 자금에 의하여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하여 연수시킨 것을 효시로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表 I-1 참조). '60년대 중반까지는 자력에 의한 협력사업은 미미하였고 거의 UN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자금에 의존하여 技術協力(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프로젝트 기술 제공)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체적 협력사업은 '60년대 말부터 기술원조를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기자재 공여는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1977년부터 실시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80년대 초에 대통령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순방시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터이며, 이때부터 民間部門의 경제교류 및 진출확대도 고려되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1987년에는 재무부에 對外經濟協力基金이 설치되어 개도국과의 양자간 公的資本協力を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

에는 효율적인 협력사업의 관리와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國際協力團(이하 협력단)을 설립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제외한 기존의 정부 각 부처의 국제협력사업을 협력단에 이관, 국제협력창구의 一元化를 꾀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表 I-1〉 우리나라의 國際協力 沿革

시 대	연 도	내 용	비 고
60년대	1963	• 미국 AID의 원조계획 및 자금에 의거 개도국 연수생 훈련 최초실시	외무부 과기처
	1965	• 정부자금에 의한 연수생 초청사업 개시	"
	1967	• 정부자금에 의한 전문가 파견사업 개시	"
	1969	•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 초청훈련 실시 • 정부자금에 의한 프로젝트 기술공여 개시	" 과기처
70년대	1975	• 기능공 초청훈련 개시 —'75~'82까지는 과기처 위탁사업으로 실시 —'83년 이후 노동부 자체 실시	노동부
	1977	• 무상원조 사업 개시	외무부
80년대	1981	• 공동연구사업 개시	KAIST
	1982	• 국제개발 연찬 사업 개시	KDI
	1983	• 건설기술자 초청훈련 개시	건설부
	1984	• 무상건설 기술용역사업 개시	건설부
	1987	• 대외경제협력기금 신설 • 과학재단에 대외기술공여사업 집행업무위탁	재무부 과기처 외무부
	1988	• 대개도국 통신기술지원 무상용역사업 개시	체신부
	1989	• 한국 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개시	UNESCO
		• 경기원, 무상기술용역사업 개시	경기원
90년대	1991	•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외무부 산 하

향후 우리나라의 國際協力事業은 협력단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협력역사가 아직 일천하여 체계적인 협력사업을 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본다. 協力財源의 규모도 선진국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라 더욱 효율적인 협력자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증가될 협력사업에 대한 기반조성도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개발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원조의 본질적 동기인 人道主義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國際協力の 意味를 재평가하여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協力財源의 效率的 配分政策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상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협력재원의 효율적인 國別配分案을 제시하며 重點協力國家를 선정하고자 한다.

研究의 目的을 위하여 다음 章에서는 기존의 國際協力類型을 협력 동기별로 파악하고 주요 원조국의 원조배분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國際協力の 理念과 現實의 차이를 파악하여 제Ⅲ장에서 논할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방향의 정립에 대하여 준비하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協力方向의 定立을 위하여 국제경제학적 시각과 국제윤리적 관점에서 國際協力에 대한 意味를 재검토하여 우리나라의 援助理念을 설정한 후 이념의 구현을 위한 協力財源의 효율적인 配分原則을 交流誘發度의 概念을 활용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重點協力國家의 선정과 協力財源의 國別配分에 대한 세 가지 基準(일반배분기준, BHN 기준, 특별 배분기준)과 그에 따른 要因을 配分原則에 의거하여 정립한 후 국별 차별화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교류유발도를 추정하는 模型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Ⅴ장에서는 세 가지 기준별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효율적 국별원조배분을 위한 國別量的政策 方案을 일반배분기준에 의

하여 선정된 국가에 국한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Ⅵ장에서는 일반배분기준의 중점협력국가를 경제발전단계별로 재구성하여 원조방식과 지원분야를 달리하는 國別質的政策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國際協力の 理念과 現實

II. 國際協力の 理念과 現實

開途國의 經濟發展과 福利의 增進이라는 理念 또는 名分아래 지금 까지 주로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대개도국 국제협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상의 協力動機는 상기의 理念과 차이를 보여왔다고 분석되어 진다. 供與國의 對開途國 政策과 時代의 潮流에 따라 協力動機는 政治優位 追求型, 經濟利益 追求型과 人道主義 追求型援助의 세 가지 유형 또는 세 유형의 複合型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유형에 따라 원조의 방식과 지역(국가)별 배분도 달리해왔다.

1. 國際協力の 理念과 動機

가. 政治優位 追求型援助

국제정치 및 외교무대에서의 리더쉽과 영향력의 제고를 위한 동기에서 출발된 국제협력의 유형으로 구체적 원조목적에 따라 安全保障의 確保와 구식민지에 대한 宗主國으로서의 權威回復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냉전체제하의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주장(super powers)이었던 미국과 구소련이며, 각각 양진영의 영역확대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조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원조의 형태는 경제원조뿐만 아니라 군사원조도 중요시되었으며, 원조의 배분도 地域分類(geographical code)에 따라 군사 및 외교적 요충지역과 친공여국 정부수립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가 후자의 형태에 해당된다. 영국과 프랑

스는 각각 영연방(Commonwealth nations)과 불어문화권(Frankp-hone countries)을 내세워 과거 지배지에 원조뿐만 아니라 각종 교역의 혜택을 중점적으로 부여해왔다. 한가지 특이점으로는 프랑스가 문화보급수단으로 원조정책을 사용하여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70년대에 世界秩序의 多極化趨勢가 가시화되면서 개도권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南南協力이 주창되기 시작하였고 제3세계권이 결집되자 미국과 구소련은 영역의 확대보다는 기존의 세계질서를 현상 유지하고자 하는 완화된 목표로 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미국과 구소련의 제3세계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지자 우리나라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제적 지지확보를 위해 제3세계권에 대한 독립적 외교활동 강화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개도국 특히 제3세계에 대한 미국 의존적 외교정책에 한계를 인식한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對開途國 外交政策을 수립하였고 外交手段으로서 주로 기자재 공여의 형태로 원조를 실시하여 왔다.

나. 經濟利益 追求型援助

輸出市場擴大, 資源安全保障, 投資環境造成 등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협력동기로 원조를 실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원조가 供與國의 經濟的 利益으로 환원된다는 이론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生産要素는 資本과 技術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부족한 개도국으로서는 원조의 동기 또는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공격투자(원조)를 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풍부한 天然資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도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선진국의 원조를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공여국은 기술 및 자본협력을 제 공함으로써 반대급부로 개발권이나 판매권 등을 획득하여 資源確保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원조에 의한 수원국의 경제개발 촉진은 市場의 擴大를 수반하게 되고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을 유발하게 되어 원조공여국의 기업에 유리한 輸出과 入札 環境을 조성해 준다. 또한 원조를 통하여 受援國 政府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企業의 投資進出에 유리한 정책 및 環境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특징은 원조의 분야와 형태가 供與國의 民間部門, 특히 해외관련부문의 私的利潤追求 기회의 확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 類型의 전형적인 예로는 日本을 들 수 있겠다. 日本은 戰後 초기에는 戰爭賠償의 성격으로 국제협력을 시작했지만 점점 경제이익 추구의 방향으로 원조정책을 선회하여 민간부문의 수출시장의 확대, 천연자원의 확보, 공해산업과 대개도국 우위산업의 해외이전을 위한 環境조성에 역점을 두어 원조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援助의 配分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 및 지역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근래에는 막강한 엔파워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내 政治的 力量을 제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주요 중점지원 개도국의 對日本 經濟從屬化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시장에 의존한 成長政策의 성공으로 '80년대 중반부터 개도국의 先頭走者로 부상되면서 後發開途國에 대한 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개도국에 대한 정보와 진출기반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다행히도 근래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단의 설치로 公的協力基盤을 마련하였고 民間部門의 대개도국 진출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開途國內에서도 우리나라의 成長經驗에 대한 높은 평가와 아울러 중간기술 등의 優位部門에 대한 國際協力の 需要가 증가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민간부문의 경제교류확대를 고려한 국제협력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 人道主義 追求型援助

全世界的 衡平이라는 인류애적 국제윤리에 근간을 둔 국제협력의 유형으로서 戰後 우리나라 등 몇몇 新興工業國만이 탄생했을 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貧富差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자 인도주의 추구형 국제협력은 先進國民을 중심으로 강하게 주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國際交流가 활발해지면서 선진국의 풍요와 개도국의 빈곤이 併存한다는 인식이 심화되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세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원조가 주창되어 왔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캐나다와 북구유럽국가들이며 인도주의에 따라 원조도 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NGOs(비정부협력단체)가 인도주의에 따라 원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人道主義的 원조는 미미한 편이나 이미 오래전부터 最貧國에 의료진 등을 파견하여 왔으며 해외재해의 발생시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원조를 실시해왔다.

2. 主要 援助國의 援助配分

가. DAC會員國의 援助配分 總括¹⁾

DAC회원국의 兩者援助(쌍방원조)는 <表 II-1>에 나와있듯이 貧國이 집중되어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양을 배분하여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4개 회원국중 그리스,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터키를 제외한 20개국이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최근(1991)에 가입하여 공식통계는 두 국가를 제외한 18개국만이 현재 집계되어 있음.

〈表 II-1〉

DAC회원국의 地域別 援助配分

(단위: %)

국 가 명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시아지역 및 오세아니아		중동 및 아프리카		중 남 미	
	1979/80	1989/90	1979/80	1989/90	1979/80	1989/90	1979/80	1989/90	1979/80	1989/90
호 주	8.3	12.6	20.7	15.8	64.8	61.7	2.6	2.7	1.2	1.2
오스트리아	14.4	27.6	16.8	9.0	31.6	32.4	24.4	19.6	6.9	4.6
벨기에	58.8	54.1	11.4	8.9	10.0	6.2	10.7	3.7	5.1	6.8
캐나다	30.3	31.7	31.0	14.2	6.4	10.4	6.9	5.1	10.0	9.8
덴마크	42.0	45.0	27.9	18.0	10.3	6.4	7.0	5.6	5.3	5.3
핀란드	47.6	44.7	18.2	14.9	14.4	9.5	5.9	7.2	6.4	6.8
프랑스	44.0	51.0	6.1	4.3	12.7	12.9	11.4	8.1	21.9	17.3
독일	32.1	33.3	20.3	12.6	7.6	11.5	24.5	18.4	9.7	11.5
에이레	60.0	57.9	0.0	7.9	0.0	3.9	0.0	2.6	0.0	3.9
이태리	46.6	49.0	29.7	9.6	5.2	6.9	5.7	8.1	8.9	14.2
일본	15.9	19.1	38.2	17.3	29.2	41.5	7.6	6.7	6.4	7.7
네덜란드	31.1	34.3	22.4	15.9	9.8	14.0	6.6	4.9	20.8	17.1
뉴질랜드	5.7	5.1	8.9	3.4	74.0	64.8	1.6	0.0	2.4	1.1
노르웨이	41.6	46.5	28.2	16.7	9.6	5.5	8.9	2.0	5.5	8.4
스웨덴	39.8	40.3	23.4	15.8	14.4	9.2	5.6	3.7	5.4	8.6
스위스	33.3	39.7	23.3	13.3	8.4	9.1	5.6	4.4	13.1	11.5
영국	34.7	43.7	32.6	20.1	8.4	8.9	7.4	3.5	6.7	6.9
미국	14.5	15.5	15.1	9.9	8.9	6.2	39.0	34.1	10.5	15.6
총 계	28.8	32.8	21.0	12.2	13.8	16.3	17.6	12.9	11.2	12.0

* 자 료: OECD(1991)

왔으며, 다음으로는 아시아 및 남태평양, 중동, 남미 순으로 배분하여 왔다.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온 원조국으로는 에이레, 벨지움, 프랑스, 이태리, 영국 및 북구국가이며 이 지역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국가로는 뉴질랜드, 호주,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세아니아 국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미국과 일본의 최우선 지역은 각각 중동과 아시아지역으로 나타났다. DAC회원국중 5대공여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으로 5대 공여국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집중도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이 된다.

最貧國에 대한 원조비중이 높은 원조국으로는 스위스, 에이레 및 북구국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원조규모가 작지만 人道主義에 입각한 원조를 실시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表 II-2 참조). 5대공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중 최빈국에 대한 원조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원조국은 프랑스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최근에 그 비중도가 점차 낮아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5대공여국의 양자원조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원조와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表 II-2〉

最貧國에 대한 DAC회원국의 援助

국가명	1979/80			1989			1990		
	금액 (백만\$)	비율 (%)	GNP비율 (%)	금액 (백만\$)	비율 (%)	GNP비율 (%)	금액 (백만\$)	비율 (%)	GNP비율 (%)
호 주	123	19	0.10	231	23	0.09	158	17	0.06
오스트리아	20	13	0.03	61	22	0.05	94	24	0.06
벨 기 에	162	26	0.14	193	27	0.13	243	27	0.12
카 나 다	323	30	0.14	603	26	0.11	626	25	0.11
덴 마 크	204	43	0.32	387	41	0.39	428	37	0.34
핀 란 드	39	39	0.08	244	35	0.22	277	33	0.21
프 랑 스	627	16	0.10	1,369	18	0.14	1,659	18	0.14
독 일	1,059	30	0.13	1,266	26	0.11	1,385	22	0.09
에 이 레	4	14	0.02	14	29	0.05	17	30	0.05
이 태 리	174	36	0.04	1,198	33	0.14	1,094	32	0.10
일 본	955	32	0.09	1,625	18	0.06	1,465	16	0.05
네덜란드	453	29	0.28	595	28	0.27	722	28	0.26
뉴질랜드	11	15	0.05	11	13	0.03	14	15	0.03
노르웨이	172	37	0.34	355	39	0.40	461	38	0.45
스웨덴	354	36	0.31	532	30	0.28	694	34	0.31
스위스	78	33	0.08	202	36	0.11	264	35	0.11
영 국	624	31	0.13	770	30	0.09	755	29	0.08
미 국	946	16	0.04	978	13	0.02	1,970	17	0.04
총 계	6,323	25	0.09	10,634	23	0.08	12,327	22	0.08

* 자료:OECD(1991)

나. 主要 援助國의 配分政策²⁾

1) 호 주

호주의 配分政策의 특성은 近地優先과 주요협력국가에 대한 重點支援을 들 수 있다. 원조대상국을 지형학적 중요성과 지리적 근접성에

2) 주요 원조국의 원조배분동향에 대한 통계는 〈附錄 表 1-1~8〉을 참조하기 바람.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원조의 차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表 II-3 참조). 1등급 국가로 파푸아뉴기니아(PNG) 및 태평양 도서국가를 선정하여 일반무상원조와 모든 분야에 걸친 프로젝트형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칸츄리 프로그래밍을 실시한다. 2등급으로 분류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소국에는 分野別 優先順位를 정하여 프로젝트형 원조를 제공하나 칸츄리 프로그래밍은 1등급 국가와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3등급 국가인 중국 및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서남아시아 국가에는 호혜적인 입장에서 선별된 特定部門에 프로젝트형 원조를 제공하며, 칸츄리 프로그래밍은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의 기타 개도국에는 일반 무상원조중 식량원조, 기술원조, 교육지원을 실시하지만 프로젝트 원조나 칸츄리 프로그래밍은 지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분현황을 보면 90년도 기준으로 호주는 남태평양지역 국가와 아시아에 전체 양자원조중 75% 이상을 배분하였고 상위 15개 수원국에 80% 이상을 배분하였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아(PNG)에 집중적인 원조(30% 이상)를 장기적으로 공여하여 온 결과 援助效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인식한 호주는 PNG정부와의 최근 원조 조약에서 전체원조중 호주의 비중을 낮추고 타원조기관과의 공동 프로그램추진에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원조형태도 예산지원 보다는 프로젝트형 원조에 치중하기로 하였다. PNG외의 주요수원국은 인도네시아(10%),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며 그 중 중국은 1985년부터 수원국이 되었다. 인디아와 파키스탄에는 1990년도 부터 3년 프로그램 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는 약 10% 정도만을 배분하고 있다.

〈表 II-3〉

호주의 援助 配分政策

등 급	지역 및 국가	원 조 방 식		
		일반원조 ¹⁾	프로젝트형원조	칸쥬리프로그래밍
1	파푸아뉴기니아, 남태평양 및 인도양 도서국가	제 공	모든분야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
2	동남아시아국가 및 남아시아 소국가	제 공	우선순위에 의한 분야 선별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
3	서남아시아국가, 중국	제 공	특정선별분야	광범위하고 한정적인 접근
4	기타 지역 및 개도국	식량원조, 기술 및 교육 지원	지 양	지 양

* 자 료: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1984)

註)1. 일반원조는 기술협력, 연구지원, 다방원조기구를 통한 원조, 재난구호, 개발 수입금융기관(DIFF), NGO에 대한 보조를 포함함.

2) 카 나 다

캐나다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디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전체 양자원조의 60%정도를 배정할 정도로 국지집중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점차 원조 수원국의 범위를 넓혀왔다. 현재는 최빈국을 중심으로 언어, 지역, 국가별로 체계적인 배분정책을 수립하여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表 II-4 참조). 英語와 佛語의 이중언어 통용국의 역사적 및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영연방과 불어권 개도국에 전체 양자원조중 65%를 배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별 배분도 고려하여 아프리카(약 45%), 아시아(약 40%) 그리고 중남미(약 15%)순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등급화하여 차별지원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고려가 등급분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1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는

5개년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지원된다. 상위 25개 수원국에 대한 援助集中度가 50% 정도로 비교적 높은 分散度を 보이고 있다.

〈表 Ⅱ-4〉 캐나다의 援助配分政策

	영어권아프리카	불어권아프리카	아 시 아	중·남미
카테고리 1	이집트, 가나,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아이보리 코스트, 기니아, 르완다, 버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세네갈, 자이레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콜롬비아, 가이아나, 하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티워드/윈드워드제도, 페루
카테고리 2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이디오피아, 말라위, 나이지리아, 수단, 우간다	알제리아, 가봉, 모로코, 토고, 튀니지아	말 레 이 지 아, ASEAN기관, 지역기관	바베이도스, 브라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에쿠아돌,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지역기관
카테고리 3	앙골라, 모잠비크, 나미비아, 소말리아 등 13국	베닌, 차드, 콩고, 감비아 등 13국	부탄, 버마, 터키, 남태평양도서국 등 15국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12국

* 자 료: 한국수출입은행(1990)

3) 프 랑 스

불어문화권으로 대표되는 아프리카 30개국과 카리브지역 9개국에 전체 양자원조예산의 75% 정도를 배분하고 있다. 1989/90년 현재 상위 25개 수원국이 70% 가량을 배분받고 있어 중점협력 국가에 대한 援助集中度가 높은 편이다. 상위 25개 수원국중 아시아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디아로 저소득 국가이기는 하나 인구가 많아 경제규모가 매우 큰 국가인 특징을 갖고 있다. 1991년부터 인도지나 국가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있어 프랑스의 援助政策은 과거 식민국 또는 점령국에 대한 歷史的 關聯性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독 일

독일은 130여개국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면서도 상위 25개 수원국에 약 50%를 배분하는 廣範圍하면서도 集中的인 援助政策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援助分散度를 높여가고 있어 주요 장기 수원국인 터키, 인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집중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근래에는 이집트와 중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원조공여의 기준으로는 貧國優先을 삼고 있어 빈국이 많이 몰려있는 아프리카에 35%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

5) 일 본

지난 20여년간 아시아지역에 전체 양자원조 예산의 75%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여하여 온 일본의 배분정책은 지리적으로 近地優先의 특성을 갖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원조를 크게 늘려 1990년 현재 15% 정도를 배분하고 있으나 DAC회원국의 평균 아프리카 원조비중도 (35%)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일본은 아프리카, 남미지역 국가에 대한 원조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걸프전 이후 중동에 대한 원조와 소련붕괴후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원조도 확대할 계획으로 국제동향 변화에 상당히 신속적인 정책을 펴오고 있다. 最貧國이 일본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DAC평균보다 낮아 인도주의적 원조정책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위 15개 수원국이 양자원조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협력국가에 대한 집중지원도가 무척 높으며, 자원이 풍부하고 미개발지가 많은 인도네시아가 최대 장기수원국이었다는 점은 注目할 만하다.

6) 미 국

미국의 원조정책은 國際社會에서의 指導力 提高와 安全保障 次元에서 원조를 실시하는 특색을 보여왔다. 70년대 초를 전후한 시기에는

인디아, 베트남, 파키스탄, 한국 등 주요분쟁 또는 군사요충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였고 80년대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전체 양자원조의 40~50%정도를 배분하였다. 근래에는 중미의 분쟁지역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등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남미에서의 지도력 강화 전략으로 남미에의 원조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7) 영국

영국의 지역별 양자원조의 배분동향을 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비중도가 8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989/90년도 배분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아프리카에 약 55%, 아시아에 약 30%, 남미에 약 7%를 배정하였다(表 II-1 참조). 주요 수원국은 1970/71년에는 인도, 케냐, 파키스탄, 1980/81년에는 인디아,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1980/90년에는 인디아, 방글라데시, 케냐로 인디아에 대한 특별지원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위 25개 수원국에 대한 집중도는 세 기간 동안 각각 80%, 68%, 63%로 나타나 援助의 集中度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한국

韓國의 援助配分政策의 특성은 小規模 多國家 支援으로 볼 수 있다. 협력단에서 개도국에 제공하는 원조의 주요 수단별 1991년도 수원국의 범위를 보면 기자재 등 공여사업이 89개 국가, 연수생초청사업이 90개 국가, 그리고 전문가파견 사업이 24개 국가로 각 사업별로 예산의 규모에 비하여 수원국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원조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자재 공여사업의 1992년도 배분계획을 보면 총원조예산 1,200만불 중 상위 25개 수원국에 대한 원조배분이 약 30%인 400만불 밖에 안돼 원조규모에 비하여 너무 광범위하게 배분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원조의 집중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 援助의 國別差別化가 타 공여국에 비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수단별 지역배분을 보면 연수생 초청과 전문가 파견은 아시아에 집중적인 반면 기자재 등 공여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우선하여 배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表 II-5).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UN에 가입하지 못한 외교적 상황에서 국제적 지위확보를 목적으로 제3세계가 몰려있는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기자재 등 공여를 실시하여 왔다. 1991년의 기자재 등 공여는 아시아지역에 31%나 배분되었지만 이는 몽고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유보액 100만불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뚜렷한 배분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연수생 초청이나 전문가 파견사업 등 技術協力은 아시아에, 기자재 등 공여사업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온 점은 다국가 지원방식에 따라 교통비 등을 감안한 분배정책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원조정책을 실시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던 협력사업을 협력단으로 이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원조예산의 국별배분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여서 援助手段別로 國別援助를 배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表 II-5) 韓國의 主要 援助手段別 兩者間援助 地域配分

(단위: %)

	아 시 아	아프리카	중 남 미	기 타
기자재 등 공여 1977~90 1991 (금액기준)	18.6 31	40.3 28.3	29.3 28	11.8 12.7
연수생 초청 1963~91 (인원기준)	67.6	13.1	10.3	9.0
전문가 파견 1967~91 (인원기준)	50.3	18.5	25.5	5.7

Ⅲ. 國際協力の 意味와 우리나라의 協力方向

Ⅲ. 國際協力の 意味과 우리나라의 協力方向

1. 國際協力の 意味

國際協力の 근본적 목적은 開發國의 經濟發展과 福利의 增進에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人道主義에 입각한 단순 공여적 원조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원조는 일시적 효과만 보일 뿐 목적달성의 근본적인 방법이 아님을 지난 30여년간의 원조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주의적 원조를 병행하면서 開發國의 제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國際協力の 方向을 과연 정부차원에서만의 협력으로 충분한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추구하는 것은 自由交易에 의한 共同繁榮과 比較優位에 의한 國際分業論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國際分業論은 財貨와 用役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자유교역에 의하여 교역국가의 경제가 향상되고 생산요소의 가격이 동일화된다는 이론이다. 즉, 재화와 용역의 자유교역에 의하여 세계경제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요소의 하나인 勞動의 價格(임금)이 전세계적으로 동일화가 이루어져 富의 國際的 衡平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理論은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학의 주류로서 신장되어 왔지만 현실은 이론적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국제협력의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理論과 現實과의 괴리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이 理論의 非現實的 假定을 지적하여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도 있지만 “自由交易에 의한 共同繁榮”이라는 명제에는 아직까지 커

다란 異論이 제기되고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先進圈과 開發圈 양쪽에서 국제협력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힌 후 새롭게 대두되는 국제경제현상을 검색하는 것이 國際協力の 意味를 재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전후 미국을 위시한 先進圈에서는 자유교역주의를 주창하여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國際經濟秩序를 선진국에 유리한 체제로 이끌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UN, IMF, GATT 등의 국제기구 운영과 체계가 선진국에 편향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國際金融機關인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등도 개도국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大出資國인 선진국의 국제정책 방향에 따라 개발자금이 분배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선진국의 원조정책 뿐만 아니라 市場開放政策도 모든 개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국가에 한하여 特惠의 성격으로 실시하는 傾向을 보여왔다. 심지어, 친공여국 노선을 유지하는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서는 원조자금의 誤用도 방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또한 인도주의를 표방한 단순공여적 원조를 선진제국에서 실시하여 왔지만,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의 증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어 오지 못하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開發圈내에서는 해외지향적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견실하게 경제성장에 주력해 온 몇몇 개도국도 있지만 개도국의 대부분이 전후 신생국이라 잦은 政變이 발생함에 따라 정권의 유지차원에서 군부권한의 지나친 확대를 꾀하거나, 외국과의 교역확대보다는 폐쇄적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등 경제문제를 등한시하여 온 傾向을 보였고 富의 편중현상도 가중시켜 왔다. 또한 自立的 經濟發展 노력보다는 경제문

제를 선진국으로 부터의 원조로 해결하려는 소극적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더 많은 원조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외교노선마저 바꾸려는 사례를 보여 왔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援助源을 찾아 일시적으로 민생육구를 충족하려는 단기적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스스로의 한계점을 드러내 國際金融市場에서의 민간자금조달도 선진국에 비하여 더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이미 원조에 의지하려는 惰性에 젖어 있으며 특히 원조를 장기간 받아 온 나라는 援助의 當爲論까지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世界經濟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자원 및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은 퇴조하는 대신 신재료산업, 자동화산업, 정보산업 등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주도적인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선진권에서는 기술경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해져 중간기술의 대개도국 공여에도 인색함을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개도국은 産業發展에 필요한 기술획득에 더욱 어려움을 갖게 됐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확산에 의하여 개도국의 需要性向이 선진국의 性向과 비슷해져 가고 있고 국제간 상호의존의 인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교열위산업에 대해서도 보호주의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공급체제의 개도국내 마련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즉, 比較優位産業은 국내에 보전하고 比較劣位産業은 해외에 이전시키는 수직적 國際分業化에서 生産과 經營의 수평적 國際分業化로 전환되는 추세가 근래에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産業間 國際分業에 의한 교역체제는 점점 쇠퇴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조공정 및 판매망별로 생산기지가 이동하는 産業內 國際分業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간 자본 및 기술이전도 확대되어 국제간 상호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환을 民間部

門이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과 資本移轉이 통상 자본제이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技術移轉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對開途國 資本 및 技術 移轉(이하 자본이전)은 개도국에의 투자를 의미하며 투자는 개도국의 고용을 유발하여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거시적으로는 흡수능력과 교역을 확대하여 경제개발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투자국에 시장의 확대, 경쟁력강화 등 여러 형태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자본이전은 개도국과 투자국의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중이 하나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원조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대개도국 투자는 주체에 따라 政府開發援助에 의한 資本移轉(공여투자)과 民間部門에 의한 資本移轉(민간투자)의 두 가지 형태가 상정된다. 원조에 의한 자본이동은 협력이념과 동기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투자성을 고려하지않은 단순공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원에도 한계가 있으며 원조의 결정에 많은 정치적 과정이 포함됨에 따라 과다한 행정비용 등 비능률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원조에 의한 국제간 자본이동과는 달리, 민간부문에서의 자본이동은 상업적 동기에 의하여 資本의 限界收益率이 높은 산업이나 국가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자본의 한계 수익율이 선진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 정세불안, 태환성 등과 같은 國家危險(country risk)이 존재하고 경영권보호를 위한 외국자본 차별화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국제간 자본이동은 위축을 받게된다. 民間投資는 국가위험 등의 제반요소를 모두 고려한 상업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私的限界收益率(rate of private marginal return)이 높은 産業에만 치중될 소지가 있어 개도국의 경제 개발에 근간이 될 社會的 限界收益率(rate of social marginal return)

이 높은 部門(社會部門)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여투자는 민간투자가 회피하려는 社會部門에 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社會部門에 대한 供與投資가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에게 이익을 파급 시킴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공여투자 재원의 제한으로 그 波及效果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또한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공여투자 단독으로는 소수의 프로젝트나 부분적 항목만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협력의 근본적 목적인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에는 財源不足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 社會部門의 投資項目 중 개발조사, 기초 기자재 및 시설 등의 社會的 限界收益率이 더 높은 항목에는 공여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문에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면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도 수행이 가능하겠다. 순수 공여투자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완결 후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따라서 供與投資(者)와 民間投資(者)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양부문의 상호보완적인 프로젝트의 개발과 시행을 도모하고 대개도국 자본 및 기술이전에 相互協助하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공여투자의 본질적 동기는 인도주의적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긴급재난원조나 식량원조 등은 투자적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먼 느낌이나 이와 같은 원조의 발생사유를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치유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성 원조가 강조되어야 한다. 진정한 국제협력은 공여투자에 대한 효과가 공여국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수원국에서 원천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援助의 限界性을 타파하는 정책개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성장 자체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서만이 가능할 뿐이고 원조는 단지 성장과정의 촉매 역할만 한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적으로는 수원국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조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일방적 공여의 차원이 아닌 협동개발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프로그램(country programming)에 참여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의 援助方向과 理念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선진국시장에 의존한 輸出指向의 經濟政策의 성공으로 중진국 내지 선진권에 진입하는 국가로 대두되면서 대개도국 국제협력사업 적극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외부적으로는 自國産業保護論이 우리의 主輸出市場인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권에서 제기되어 선진국시장 의존적 수출정책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임금상승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웃돌아 國際競爭力이 약화되어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국제협력여건도 당분간 크게 개선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市場의 多邊化와 比較劣位産業의 海外移轉이 일반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開途國에 관한 정보와 진출경험의 不足 등으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한 원조도 간과할 수 없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문제를 타결하여 우리의 협력여건을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를

증진시켜 나간다는 방향으로 협력정책을 수립하여 能動的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協力の 基本方向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協力理念의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協力理念의 확립에는 여러 시각에서의 접근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本研究의 목적을 위해서 국제협력의 의미와 문제점으로부터 몇 가지 假定을 도출하여 協力理念에 대한 設定을 시도하고자 한다.

국제협력의 근본적 동기는 인도주의적 國際倫理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제경제질서와 원조정책을 자국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왔으며 개도국도 원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리고 國際經濟的 視角에서 援助도 하나의 部門 또는 市場으로 파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아직 미미하여 세계 원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원조의 흐름을 주도할 수도 없으며 원조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假定이 도출된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國際倫理의 범위안에서 獨自的인 協力理念의 설정과 協力政策을 추진하여도 기존의 世界援助體制내에서 그대로 수용된다.”

이 가정은 선진국의 기존 원조정책을 단순모방하거나 답습하지 말고 국제윤리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제반실정에 맞는 원조정책개발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간 민간 교역의 중요성은 이미 고전적인 國際交易理論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 여기에서는 협력이념의 설정을 위하여 교역이론을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과 기술, 그리고 문화 및 제도까지 확대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기로 한다.

“國家間 교역, 투자, 관광, 문화전파 등의 交流는 교류당사국 相互의 經濟發展과 福利의 증진에 기여한다.”

국제교류는 통상뿐만 아니라 투자, 학술, 문화, 관광 등 여러 형태를 내포하고 있으나 협력단에서는 민간의 경제교류, 특히, 자본 및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교류 촉진에 국제협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교류유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力動性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 개도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관심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동적인 민간부문의 활발한 대개도국 경제교류는 원조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타기관(대한무역진흥공사 등)도 있으나 협력단에서는 고유의 기능인 원조공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협력의 대상은 개도국의 정부부문이나 정부요인에 집중될 수도 있으나 경제발전은 민간부문에서 가시화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므로 개도국 정부에 대한 원조도 궁극적으로는 그 효과가 민간부문에서 나타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國際分業이 産業間體制에서 産業內體制로 이행하는 새로운 國際經濟環境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國家間 相互依存性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교류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부문의 특성상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이나 交流環境의 改善 등 사적인계수익율이 사회적한계수익율보다 낮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民間部門의 국제교류는 商業的 動機에서 출발하므로 원조정책에 의한 交流環境의 改善에 매우 민감하며 社會的限界收益率이 私的限界

收益率보다 높은 부문에 대해서도 두 수익율차가 원조에 의하여 보전된다면 차별을 두지 않는다.”

상기의 세 가지 假定을 기초로 하여 實行的 援助目標을 자본과 기술의 對開途國 移轉을 중심으로한 交流의 擴大로 설정하고 協力理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國際倫理와 相互依存性을 인식한 共同繁榮의 追求

향후 개도국 경제발전에 국제협력의 역할과 비중은 相互依存性의 가속화로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류량 증가가 개도국의 복리를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국제적 형평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널리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의 종국적인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의 증진에 있다면 민간부문의 역할을 도의시한 원조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민간 부문에 의한 自律的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원조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國際倫理가 협력이념의 根幹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협력여건이 아직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協力財源을 인도주의의 명분으로 개도국에 공여하는 것은 많은 대내비판을 수반하겠지만 국제협력의 본질과 여러 국내외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당분간 협력단에서 주도적으로 인도주의적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나가야만 되는 현실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윤리적 원조는 협력예산의 규모가 미미함을 인식하여 교류확대 목적의 원조와 잘 조화되는 協力方式을 개발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원조예산 규모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겠고 장기적으로는

NGO의 육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상정할 수 있는 바, 국제협력의 의미와 협력이념의 설정과정에서 논하였듯이 인도주의적 원조정책도 NGO에 의한 인도주의적 민간원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한다면 소규모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인도주의적 원조는 향후 NGO가 주도해 나가되 NGO 입장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이 높은 개도국 정부와의 협조, 개도국 내에서의 법적지위 확보 등의 업무에 協力團의 支援이 강구된다면 NGO의 활동이 크게 촉진되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협력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원조방식의 개발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제한된 협력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위하여 국별원조배분기준(이하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國別差別化 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差別化政策의 必要性은 규모의 경제성, 협력수단의 효율적 배합과 파급효과 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모든 개도국에 일률적으로 원조를 배분하는 것 보다는 배분기준에 의거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원조를 공여하고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원조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원조가 배분되는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협력사업은 기술협력, 기자재 공여, 인력협력, 청년봉사단 파견 등 제협력수단간의 연계를 통한 복합적 방식의 시행으로 원조의 相乘效果(synergy effect)를 꾀할 수 있고, 비중점협력국가에 협력사업도 원조배분규모에 적합한 협력수단의 용이한 선택이 가능해져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점협력국가에서 가시화된 원조효과가 주변국 또는 비중점협력국가에 파급되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교류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援助豫算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援助集中度가 너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국별차별화 정책은 시급하게 준비되어야 하겠다. 배분기준에 의거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고 나면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실정에 맞는 원조의 방식과 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배분기준에 의한 국별차별화가 國別量的政策이라면 국별로 배분된 원조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조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원조의 방식과 분야를 선택하여 실행하는 국별차별화는 國別質的政策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 선발개도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한된 協力豫算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援助의 量과 質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 配分原則의 定立

원조의 국별차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國別配分の 原則과 基準을 정리하여 원조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援助豫算을 국별로 배분하고 배분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나라와 원조대상국의 제반실정을 고려한 優先援助分野를 발굴하고 선정된 분야에 가장 적합한 援助手段을 동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절에서는 配分原則을 정립함으로써 효율적 국별배분의 원리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配分模型의 설정과 배분기준의 선정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로 한다.

효율적 원조배분이란 총원조효과가 極大化되도록 배분함을 말한다. 즉, 모든 수원국의 원조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이 동일하고 원조의 규모의 경제가 일정하다면 일률적인 동일배분이나 일개국에만 배분하여도 총원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국가별로 사회, 문화,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동일배분으로는 총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經濟의 效率性(efficiency)을 설명하는 미시경제학의 배분이론에서 理論的 配分原則을 정립한 후 교류촉진계수와 교류제한계수를 포함한 명시적 함수를 사용하여 政策的 配分原則을 도출하고 두 계수를 交流誘發度の 개념으로 융합하여 다시 實行的 配分原則을 정립하기로 한다.

前章에서 우리나라의 協力理念을 “國際倫理와 相互依存性を 인식한 共同繁榮의 追求”로 설정하였고, 協力目標을 대개도국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중심으로 한 교류의 확대로 정하였다. 이 이념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공동번영으로 나타나겠으나,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효과는 교류량에 반영되므로 원조와 교류는 函數關係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분석의 편의상 원조의 交流誘發函數가 신고전학파적 효용함수의 제성격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交流誘發函數를 정의해 본다.

$$F=f(X_1, X_2, \dots, X_n) \dots\dots\dots(1)$$

여기서, F =교류유발량(또는 원조의 기대효과),

X_i = i 국가에 대한 원조, $i=1 \dots\dots\dots n$

X_i 는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3) 원조와 교류의 함수관계 설정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교류유발을 원조의 기대효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사용되거나 등질임을 가정한다.⁴⁾

그리고 협력단의 협력자원(원조예산)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BA = r\overline{G} - \overline{MA} - \overline{KA} \dots\dots\dots(2)$$

여기서, BA=협력단의 원조예산(양자협력예산)

$\overline{G}$ =정부예산(또는 GNP),

$\overline{MA}$ =다자협력예산,

$\overline{KA}$ =협력단의 행정비용,

r=정부개발원조의 對정부예산(또는 對GNP)비율

즉, $\overline{G}$, $\overline{MA}$, $\overline{KA}$ 는 外生變數이며 r은 政策常數이므로 BA는 정부예산(또는 GNP), 다자협력예산, 협력단의 행정비용과 정책상수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BA가 수원국에 모두 배분된다고 보면 다음과 같은 豫算制約條件式이 성립된다.

$$BA = \sum X_i \dots\dots\dots(3)$$

交流誘發量을 예산제약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最適配分條件을 구하려면 式(1)과 式(3)으로 極大化問題를 式(4)와 같이 구성해야 한다.

$$\text{Max } F = f(X_1, X_2, \dots, X_n) \dots\dots\dots(4)$$

$$\text{Subject to } BA = \sum X_i$$

4) 중복함수(nested function)를 사용하여 X_i 에 대한 국별절적정책의 효율성에 관하여 이론을 전개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가정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원칙도출을 용이하게 한다.

Lagrange 함수를 사용하여 式(4)를 재정리하면,

$$V=f(X_1, X_2, \dots, X_n)+\lambda(BA-\sum X_i) \dots\dots\dots(5)$$

제1차 극대화조건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f_1=f_2=\dots=f_n=\lambda \dots\dots\dots(6)$$

여기서 λ 는 Lagrange 승수로 BA의 한계효과계수로 파악될 수 있다. 式 (6)은 모든 국가에서 援助의 限界交流誘發(f_i)이 동일할 때에 원조효과가 극대화됨을 나타낸다. 즉, 한계교류유발이란 최종적으로 원조의 한 단위가 투여되었을 때에 추가적으로 유발되는 교류를 지칭하므로 이 극대화조건을 충족시키는 배분정책은 교류유발여건이 좋은 국가에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더 많은 원조예산을 배분함을 의미한다. 극대화 조건으로부터 理論的 配分原則을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총원조효과는 모든 수원국에서 원조의 한계교류유발이 동일할 때 극대화 된다

지금부터는 理論的 配分原則을 근간으로 政策的 配分原則을 정립하기로 한다. 먼저 교류유발함수를 명시화하려면 특정 함수의 선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Cobb-Douglas 유형의 함수가 新古典學派的 效用函數의 제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어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式 (1)을 Cobb-Douglas 함수를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F=A_i \prod X_i^{(\alpha/\beta)_i}, \sum \frac{\alpha_i}{\beta_i}=1 \dots\dots\dots(7)$$

여기서 A는 이동상수(shift parameter)이며, α_i 와 β_i 는 각각 i국에 있어서의 교류촉진계수와 교류제한계수를 나타낸다. A는 분석의 편의상 1로 가정하기로 한다.

式(7)과 (3)으로 Lagrange 함수를 이용하여 다시 極大化문제를 구성하면,

$$V = \prod X_i^{(\alpha_i/\beta_i)} + \lambda(BA - \sum X_i) \dots\dots\dots(8)$$

여기서 제1차 극대화조건을 충족하는 국별원조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X_i^* = \alpha_i \frac{BA}{\beta_i} \dots\dots\dots(9)$$

X_i^* 는 i국에 대한 효율적 援助配分量이며 교류촉진계수에 비례하고 교류제한 계수에 반비례하여 α_i 와 β_i 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i국가에 대한 원조량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政策的 配分原則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원조의 실질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원국의 교류촉진 여건과 교류제한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분석의 편의상 α 와 β 를 交流誘發度(θ)로 융합하기로 한다. α 와 β 의 크기는 각각 交流促進要因(Ma)과 交流制限要因(Mb)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theta = f(Ma, Mb) \dots\dots\dots(10)$$

여기서, $\theta = \frac{\alpha}{\beta}$

式 (10)은 두 계수가 각각 결정될 필요없이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융합계수인 교류유발도(θ)로 추정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α 와 β 가 θ 로 융합됨에 따라 式 (9)는 다음과 같이 國別配分方程式으로 정리된다.

$$X_i^* = \theta_i BA \dots\dots\dots(11)$$

實行的 配分原則은 國別配分方程式인 式 (11)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조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원국의 교류유발도에 따라 원조를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류유발도만을 고려하여 원조정책을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편적 통념상 援助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외교정책의 일환으로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政策決定方程式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의 편리성을 위하여 외교적 또는 인도주의적 변수를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정책변수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政策決定方程式이 도출된다.

$$X_i^* = \theta_i (BA - \sum \phi_i) + \phi_i \dots\dots\dots(12)$$

여기서, ϕ 는 외교적 또는 인도주의적 원조액을 표시한다.

따라서 원조의 국별분배는 式 (12) 또는 더욱 발전된 정책결정방정식에 근거한 국별배분전략을 수립하여 원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전식 배열법(lexicographic ordering)에 의하여 외교 및 인도주의적 원조를 우선 또는 차후적으로 고려하거나, BA의 일정부분을 豫備費로 남겨 놓아 탄력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별배분방정식 式 (II)이 내포하고 있는 本質的 意味는 인도주의나 외교적 목적에 의한 원조도 상기 配分原則에 따라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말한다.

IV. 配分の基準과 模型

IV. 配分の基準과 模型

前章에서 정립된 配分原則에 따라 원조정책을 실시하려면 국별 교류유발도를 구성하는 배분기준과 요인(변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本章에서는 먼저 既存研究에서 제시되거나 사용된 기준과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고 協力動機의 제유형에 따른 기준별 요인을 효율적 원조배분의 관점에서 想定한 후, 本研究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준과 요인을 구성하고 선정된 기준과 요인에 따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配分模型을 제시하기로 한다.

1. 既存研究의 考察

가. 國外研究

1) 受援國 側面에서의 研究

開途國의 經濟發展과 福利의 增進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援助는 수원국이 처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배분기준을 도출한 연구로는 Lewis(1972), Clark(1972) 등이 있다.

이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援助의 效率性 基準이다. 이 기준은 援助의 限界에 대한 인식과 期待效果의 極大化 原理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원조의 한계란 개도국의 성장자체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뿐이고 원조는 단지 성장과정의 촉매 역할만 한다는 주장이다. 期待效果의

極大化原理은 원조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훨씬 더 기대효과가 큼을 밝힌다. 따라서 구체적인 開發計劃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을 보이며 부족한 財源과 技術에 대한 원조를 받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에 우선적인 원조의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 기준설정의 배경이다. 원조의 효율성 기준의 요소로 정부의 開發意志와 自力の 한계에 따른 원조소요량, 정책의 효율성, 성장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개발의지와 원조소요량은 총수요중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와, 목표투자와 국내투자와의 격차(gap)가 각각 변수로 사용되었고,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전제개도국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책을 상정한 후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성장가능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경제성장율, 투자증가율, 수출증가율 등 주요 巨視經濟指標를 합제한 종합지표를 사용하였다.

둘째, 成長段階別 隘路基準으로 개방경제체제(open economic regime)에서 개도국의 성장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隘路要因을 파악하고 원조소요량을 隘路要因과 관련된 變數로 파악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는 吸收能力(absorption capacity)의 부족으로 설명되는 成長段階이다. 따라서 흡수능력 확대정책의 효율성과 국내투자율을 변수로 사용한 投資基準이 제시되고 있다. 제2단계에서는 흡수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投資需要가 國內貯蓄보다 커져 외자의존도가 높아진다. 외자의존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려면 국내의 평균저축율이 소요투자율보다 커야만 하므로 貯蓄基準에 의한 원조배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 기준은 저축율을 제고시키는 정책의 효율성과 국

내저축율을 변수로 삼고 있다. 성장의 다음 단계에서는 經濟成長의 지속으로 원료와 자본재 등의 輸入需要가 급증하여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앞서게 됨에 따라 投資는 국내저축보다는 외환공급 능력에 의하여 제약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貿易政策의 효율성과 限界輸出性向(marginal export propensity)을 변수로하는 貿易基準에 의한 원조배분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는 生活水準 基準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빈부차를 줄이려는 인도주의적 노력에서 마련된 기준으로 개도국의 最低生活水準의 保障을 제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는 유아사망율, 평균 수명, 문맹율 등 보건·사회적 변수가 사용되고 있다.

2) 供與國 側面에서의 研究

供與國 입장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Imbeau(1989)를 꼽을 수 있다. 그는 공여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원조배분이 이루어진다는 OECD의 관찰을 전제로, 원조수준 결정에 관련된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변수로는 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추구, 인도주의적 인식, 이념, 자립능력 및 기존의 원조수준을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기존의 원조수준이 가장 유력한 설명변수로 나타나 원조배분정책의 지속성 또는 경직성을 엿볼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供與國의 利益追求가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정치우위 및 경제이익 추구형 국제협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주목할 점은 人道主義的 認識이 가장 약한 설명력을 보인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국제협력에는 소극적임을 간파할 수 있다.

나. 國內研究

國內研究로는 서울국제컨설팅(1989), 나원찬·송하울(산업연구원, 1989), 김학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와 심의섭(상공회의소, 1991)의 4종류가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모두 우리나라의 重點經濟協力 대상국가 선정과 관련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本研究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국제컨설팅(1989)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주협력대상국가 선정을 위한 연구로 선정기준의 요소로는 개도국의 성장잠재력, 외채상환능력, 외교적 기대효과를 고려하였다. 이 연구는 외교적 기대효과 변수인 미수교국을 강조하여 미수교국이 많이 선정된 특징을 갖고 있다.

나원찬·송하울(1989)은 OECD DAC의 분류상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고중소득국(UMICs), 독립국으로 볼 수 없는 특수지역과 총인구 100만 이하의 소국 등을 제외한 54개국을 대상으로 借款을 포함한 援助의 중점협력국가 선정을 시도하였다. 원조의 배분기준으로서 성장잠재력, 자조노력, 외자소요액, 외채상환능력, 진출확대 가능성의 5개 경제적요인을 사용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國別評價를 위해 요인당 2~3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5개 요인중 외자 소요액은 상기 국외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양자간 시각보다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요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여겨지며 외채상환능력은 유상자본 협력을 고려하여 요인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선정된 중점협력 대상국가 20개국 중 아프리카가 8개국을 차지하였고 준중점국가 15개국 중 반 이상이 아프리카국가라는 점이 특색으로 지적된다.

대개도국 경제교류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시도한 김학수(1990)는 지역과 각 지역내 국가별 경제이익 순위를 수출과 수입 그리고 투자

의 세 요인을 종합한 교류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經濟交流가 활발한 국가가 중점 또는 우선 배분 지역 및 국가로 선정되었다. 교역과 투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이 오랜기간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인식하고 민간부문에서 교역과 투자를 통하여 경제이익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대개도국 교류확대에 의한 共同繁榮을 국제협력의 목표로 설정한 本研究에 이러한 접근방식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섭(1991)은 중소기업의 투자협력을 원조와 연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直接投資進出이 우리나라의 對開途國比較優位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의 직접투자 실적과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주요대상국을 선정하였다. 개도국의 경제규모나 개발자금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의한 교류확대는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協力動機別 基準과 要因

協力動機에 따라 기존 선진국의 協力理念을 정치우위 추구형, 경제이익 추구형 그리고 인도주의 추구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협력이념은 인도주의라는 명분아래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複合型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이익 추구를 위한 원조에 제동을 걸 기능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도주의를 원조이념의 본질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원

조공여국은 外交的 手段으로서도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배분기준을 교류연관기준, 인도주의 기준과 외교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기준별로 세분화된 요인을 효율적 원조배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폭넓게 想定하여 本研究에서 정립할 배분기준과 요인의 구성에 참고하고자 한다.⁵⁾

가. 交流聯關基準

交流聯關基準의 요인은 수원국의 정치 및 사회, 경제, 원조수용성으로 大分類하여 구성될 수 있다.

1) 政治 및 社會

정치적 요인은 다시 정치안정도, 군비중, 공여국과의 정치적 관계 등으로 중분류될 수 있다. 政治的 安定度가 높은 국가일수록 원조사업의 시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원조효과(교류유발)가 증대될 수 있다. 정치안정도는 政變이나 政情不安으로 小分類된다. 軍比重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군사원조가 아닌 이상 원조효과가 감소되리라 보며 공여국과의 정치적 우호관계는 원조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여국과 유사한 인종, 문화,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사고방식이나 기호가 비슷하여 공여국의 기술, 물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원조의 교류확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군파견, 교민진출 등 공여국과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국가의 경우는 相互理解度가 높고 교섭의 여지가 많아 彈力的인 援助政策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5) 협력동기별 기준과 요인에 대한 설명변수의 예는 〈부록 表 2-1〉을 참조하기 바람.

2) 經 濟

경제요인은 타교류연관요인보다 직접적으로 民間部門에 의한 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일반적으로 시장확대성, 자원개발성, 그리고 자국산업 구조조정 측면으로 증분류될 수 있다. 市場擴大性 요인의 구성요소로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교역증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매력, 교역비중, 성장성, 비교우위도, 교역증가성을 고려할 수 있다. 資源開發性은 자원 개발 및 확보의 유리한 여건 마련에 원조의 초점이 놓이므로 자원부존도, 수입의존도, 자원이용증가성 등이 자원확보요인의 구성요소가 된다. 自國産業 構造調整은 국내생산의 比較優位가 없다고 판단되는 産業의 海外移轉을 촉진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즉, 기술전이성, 개도국 비교우위성, 투자성,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투자관리성 등이 고려된다.

3) 援助受容性

戰後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원조에 의존한 經濟政策을 실시해와 援助 當然主義에 젖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여국이 기대하는 만큼 원조에 대한 수원국의 受容態度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원조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원조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나. 人道主義基準

인도주의 기준은 상호이익추구의 성격보다는 수원국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援助의 名分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보건환경, 소득 및 인구, 교육환경, 문화수준 등의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형평성과 원조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원조수용성도 고려된다.

다. 外交的 基準

교류연관기준과 인도주의기준만을 고려한 원조배분정책은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기는 하나 彈力的 政策運用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변수의 돌출과 같은 급변하는 對內外的 援助環境變化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탄력적인 원조정책이 요구된다. 즉, 국가원수 또는 고위직의 상호방문, 개도국의 특별요청, 특별한 외교정책 등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의 지위확보, 각종 국제정책의 지지국 확보, 기타 국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수단으로서 원조가 고려된다.

3. 基準과 要因의 選定

본 절에서는 기존연구와 협력유형별 기준과 요인에 관하여 다시 검토하여 選定原則과 方向을 설정하고 本研究에서 사용할 기준과 요인을 우리의 협력이념에 따라 구성하기로 한다.

가. 選定の 問題點과 方向

수원국 측면에서의 국외연구는 援助의 效率性, 成長段階別 隘路點의 解決 그리고 生活水準隔差 解消의 세 가지 관점에서 기준을 제시하였다. 원조의 효율성 기준은 원조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을 의미하며 성장단계별 애로기준은 개도국의 경제구조에 적합한 원조수단 즉, 국별질적정책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어느 단계에 있는 국가를 원조대상국으로 선정하느냐 하

는 국별양적정책까지 고려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생활수준 기준은 인도주의적 고려로 볼 수 있다.

아직 미미한 우리나라 援助規模나 經濟現實을 고려하여 볼 때 援助의 效率性이나 重點國家의 선정없이 모든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되어 어느 정도 원조수용여건이 구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 비추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성장단계에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여 성장단계의 제1단계 또는 제2단계에 초입하는 국가중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를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선정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국내연구중 서울국제컨설팅(1989) 및 나원찬·송하울(1989)은 경제차관을 고려하여 외채상환능력 요인을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의 주목적이 협력단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자간 무상원조의 국별 배분정책에 대한 연구이므로 외채상환 능력과 같은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외자소요액 요인도 성장의 제3단계에서 고려되겠고 공여국보다는 국제적 시각의 요인으로 여겨져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김학수(1990)는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아국과의 연관도를 중시, 民間部門의 대개도국 교류에 초점을 맞춘 交流基準을 제시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 설정한 協力目標와 理念에 상당히 부응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심의섭(1991)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차원에서 投資環境基準을 제시하였는 데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協力動機別 配分基準을 交流聯關基準, 人道主義基準 그리고 外交的基準으로 재조정하여 각 기준별로 가능한 한 많은 요인을 상정하여

보았다. 기설정된 協力目標에 가장 부합되는 交流聯關基準은 정치 및 사회, 경제, 원조수용성으로 대분류되었는데 정치 및 사회상황은 협력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의 주변여건을 대표하고, 경제는 교류유발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며, 원조수용성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수원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어 정치 및 사회요인처럼 원조의 주변여건으로 파악될 수 있겠다.

정치 및 사회요인중 수원국의 정치안정도는 客觀的 評價가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원조규모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도 이 요소의 고려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사료된다. 또한 인종, 문화, 사회제도, 군파전, 교민진출 등의 요소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특정국에만 국한되므로 일반적인 배분원칙에 포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특정요인별 별도의 기준에 의한 협력정책의 수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군사력이 높은 국가는 경제발전에 대한 自主勞力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가능하여 일반적 적용 요인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經濟要因을 시장확대성, 자원확보성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의 세 요인으로 중분류하여 세 요인별 구성요소도 구성하여 보았으나 구성요소의 수가 많아 분석비용이 높고 몇몇 요소는 서로 의미가 중첩되거나 객관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교류전척도와 교류증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요인을 재분류하고 구성요소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확보성 요인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객관적 지표의 선정이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 자원만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도 상정할 수 있겠지만 이 요인을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타 경제요인으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여겨짐에 따라 선정된 중점국가중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는 자원개발 방식의 원조수단을 동원한 협력정책을 강구하여 나가면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援助受容性은 기존연구에서도 지적되지 않은 요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아직 개도국이며, 기존 선진국의 원조배분 방향을 답습하지 않고 자체적인 협력이념과 목표를 설정하여 나간다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원조의존도가 낮은 국가를 배분정책에 고려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人道主義와 外交的 基準에 의한 배분정책은 交流聯關基準과는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겠다. 다만 인도주의적 기준도 상대적으로 원조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함으로써 선진국의 원조배분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선진국이 소홀히 한 국가에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정책을 구축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류연관기준이나 외교기준에 국제협력의 인도주의적 요소가 배제되면 안되리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國別配分基準은 다음과 같은 原則과 方向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첫째, 기설정된 우리나라의 協力理念과 目標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여국의 원조이념과 목표가 원조배분 정책에 반영됨을 주요 원조국의 배분성과에서 살펴 보았듯이, 선진국의 원조배분 방식을 그대로 답습 또는 모방한다면 우리의 이념과 목표의 구현은 어려우리라 보며, 과거 선진국에서 시행착오한 부분까지 재시행하게 되는 위험도 따르게 된다.

둘째, 總援助效果가 極大化되도록 이미 정립된 配分原則을 근간으로 선정한다. 즉, 협력이념과 목표의 구현이 최소의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배분개념에 근거를 둔 기준과 요인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정된 협력재원의 규모를 인식하여 피원조환경이 발달되어 있고 교류유발여건이 좋은 국가에 집중적인 원조가 배분된다면 배분의 효율성은 제고된다.

셋째, 간략하면서도 援助의 本質的 要素를 모두 반영하는 綜合的 國別配分政策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배분기준이나 인도주의적 기준 뿐만 아니라 특정요인별 기준도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적 배분기준은 교류를 직접 촉진시키는 목적과 인도주의 목적의 양면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원조의 인도주의적 요소만을 고려한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준도 설정하여 두 기준에 따른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고 기준별로 중점협력국가를 지원하는 방식이 구축되어야 한다. 배분요인중 의미가 중첩되거나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부분, 특정 몇 개국에만 관련되는 부분, 차관과 연관된 부분 등을 가능한 한 배제하여 원조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무상원조의 특성을 반영하되,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고려를 하는 彈力的이고 綜合的인 選定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配分基準과 要因의 選定

協力目標인 國際交流의 擴大를 촉진하며 개도국민의 基本的 需要(basic human needs, BHN)를 충족시켜 나가고 원조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원조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一般配分基準과 BHN基準, 그리고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特別配分基準으로 분류하여 綜合配分基準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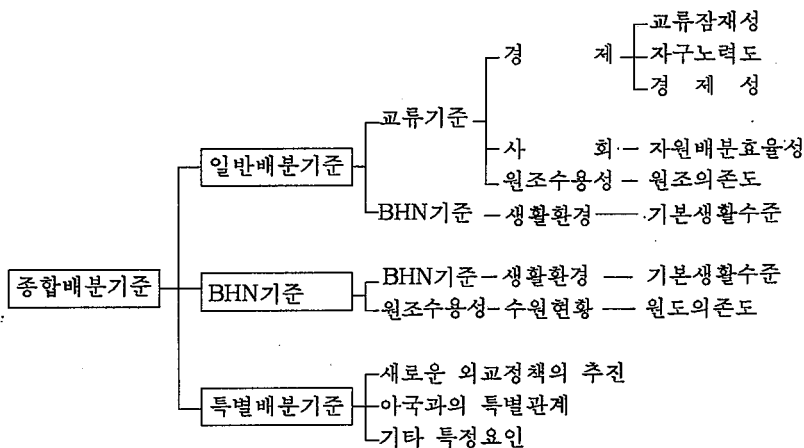
일반배분기준은 협력이념의 배경인 국제윤리와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교류기준과 BHN기준으로 양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교류유발여건과 피원조환경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하는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류기준을 경제, 사회, 원조수용성 기준으로 세분하여 구성하고자 한다(圖 IV-1 참조).

직접적으로 원조의 교류유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經濟基準은 교류잠재성, 자구노력도, 경제성의 세 요인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교류잠재성은 경제의 개방도와 우리나라와의 교류편리성에 의하여 설명되고 개도국의 자구노력도는 성장성으로 살펴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경제성은 시장의 규모와 민간교류의 성과로 설명될 수 있다. 社會基準을 역사, 문화, 정치안정성 등 여러 정치, 사회요인으로 살펴 볼 수 있지만 국가자원의 배분과 관련되고 객관적인 평가가 쉬운 요인으로는 軍事力의 상대적 비중도가 一般配分基準을 도출하는 데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援助受容性 기준은 수원국의 원조에 대한 시각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여겨지며 사회기준과 함께 피원조 환경을 잘 설명한다고 판단된다.

〈圖 IV-1〉

配分基準의 構成



BHN기준으로는 인간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잘 대표하는 요소의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 보건, 문화, 구매력의 네 요소로 기본생활수준 요인을 구성하기로 한다.

교류기준과 BHN기준으로 각각 분리된 중점국가 선정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圖 IV-1〉과 같이 援助의 本質(인도주의)이 반영되는 일반배분기준과 배분효율성을 반영하는 BHN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성격별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고 성격에 적합한 원조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배분기준 및 BHN기준에 고려되지 않은 특정 요인이나 우리나라와의 특별관계, 그리고 탄력적인 외교정책을 고려한 특별배분기준도 준비하여 綜合的인 配分基準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說明變數의 選定

각 기준과 세부요인(요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모든 대상국에 적용될 수 있는 變數의 選定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定性的 配分要因도 定量的 變數로 설명하거나 가능한 相對的 概念의 變數를 사용하는 것은 客觀的 配分基準의 도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선정된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表 IV-1 참조).

1) 一般配分基準의 變數

가) 交流基準

먼저 經濟基準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기로 한다. 교류잠재성을 대표하는 대외개방도와 교류편리성은 각각 對外交易의 상대적 비중(무역/GNP)과 距離를 설명변수로 선정할 수 있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가 미미하여도 교역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는 開放이 되어

〈表 IV-1〉

說明變數와 加重值

기준		소기준	요 인	요 소	변 수	가중치 ¹⁾
일반배분기준	교류기준	경제	교류잠재성	대외개방도	교역량/GNP	1
				교류편리성	거 리	1
			자구노력도	성 장 성	경제성장을	1/3
					산업성장을	1/3
					투자증가를	1/3
			경제성	시 장 성	인 구 1인당 GNP 면 적 GNP	0.25
						0.4
				교 류 성	무 역 (아국과의 무역/총교역량) 투 자 (금액 0.3, 건수 0.7) 건 설 (금액 0.3, 건수 0.7)	0.1
						0.25
	사 회	자 원 배 분 효 율 성	군 사 력	군인수/인구 국방비/GNP	0.3 0.7	
	원조수용성	수원현황	원조의존도	피원조액/인구 피원조액/GNP	0.5 0.5	
BHN 기준 ²⁾	생활환경	기본생활수준	교 육	교육달성도 (문맹율 0.5, 평균교육 기간 0.5)	1	
			보 건	평 균 수 명	1	
			문 화	라디오 보급율	1	
			구 매 력	1인당 실질소득	1	
특별배분기준	외교정책	국 제 정 세 변 화	주요 외교정책 변수			
	특별관계	역사·문화적 특수한 관계	군 파 전·문 화			
	기타특정 요 인	일반기준에 반영되지 못하 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 다 고 판단되는 사항			기초과학기술 수준 기지원 국가중 일반배분 기준과 BHN기준에 선정되지 않은 국가	

註) 1. 가중치는 설명요소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냄.

2. BHN기준은 독립적인 기준으로도 구성됨 (圖 1과 본문 참조).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交流增加의 여지가 많고, 距離가 가까울수록 교통비와 투자시설의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어 距離는 교류편리성의 대표적 설명변수로 매우 적합하다(karmacharya, 1989). 또한 거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친밀도를 내포하는 변수로 평가될 수 있다.

자구노력도의 요소인 성장성의 설명변수로는 국내총생산(GDP), 산업, 투자의 세 가지 성장율(증가율)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GDP의 성장율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고 성장의 제1단계 기준을 고려하여 투자증가율도 포함하기로 한다.

經濟性を 시장성과 교류성의 두 요소로 분류한다. 市場性은 구매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GNP, 1인당 GNP, 면적의 네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로 하고 交流性은 민간부문의 상업적 동기에 의한 교류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대상국의 총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업 및 투자진출성과를 변수로 선정하기로 한다. 단순히 우리나라와의 절대적 교역규모를 사용하기 보다는 상대적 비중을 고려함이 변수 값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건설 및 투자진출의 변수 값의 산정에도 금액(30%) 뿐만 아니라 건수(70%)도 고려하여 교류빈도를 많이 반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社會要因의 資源配分 效率性에 대한 대표적 요소로 군사력을 선정하였다. 군사력에 대한 변수로는 국방비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군인수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선정하면 국가자원의 배분효율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援助依存度を 설명하는 변수도 피원조금액과 GNP의 비율, 그리고 1인당 원조액의 두 가지 상대적개념의 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나) BHN 基準

教育에 대한 설명변수로 문맹율과 평균교육 기간을 통합한 教育達成度를 사용하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겠고 平均壽命이 영양상태, 의료여건, 위생환경 등을 잘 반영한다고 보아 保健環境의 변수로 선정하고자 한다. 文化水準을 설명하는 변수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개도국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라디오 보급율이 적절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購買力을 나타내는 변수로 물가수준을 고려한 1인당 실질소득을 사용하기로 한다.

2) BHN基準의 變數

상기의 BHN기준의 설명요인과 변수를 그대로 적용하되 원조수용성의 변수를 첨가하여 원조효과의 제고를 도모하기로 한다.

3) 特別配分基準의 變數

特別配分基準은 일률적으로 모든 개도국에 적용할 수 없는 요인이거나 변수중 원조정책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特定要因이나 우리나라와의 特別關係 등을 고려하여 각 요인 또는 관계사항별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국제정치 및 외교상황의 변화에 대비하여 주요 外交政策의 일환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外交政策 요인의 변수로는 국제질서의 개편과 변화에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가 선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위직의 방문, 先進國 政策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의 결의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 많은 변수가 고려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역사 및 문화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대표하는 변수중 우리나라 교민의 진출 또는 군파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기타 특정요인중 소득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못하지만 基礎科學 水準

이 높은 국가와 과거 지원국가에 대한 특별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연구에서 선정한 이 기준의 변수는 다음 章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4. 配分模型

前章에서 도출한 정책결정방정식 式 (12)에 근거한 국별배분정책을 수립하려면 원조대상국가별로 交流誘發度를 직접 측정하여 교류유발도의 크기에 따라 援助豫算을 배분하여야 하나, 주요 기준으로 국별 유발도의 절대치를 먼저 측정하여 기준별 중점협력 국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국가의 절대적 유발도의 비중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되겠다.

교류유발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기존통계자료를 활용하여 回歸分析法, 移動平均法, 常數借入法 등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역사가 짧아 자료도 부족하고 기존 국별배분정책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外國의 국별배분안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의 협력이념과 목표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統計的 推定法(stochastic approach)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認知的 常識(cognitional common sense)에 근거한 決定的 推定法(deterministic approach)으로 교류유발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고유의 협력이념과 목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配分基準을 설정해야 함은 바로 협력단위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준과 요인별 가중치를 인지적 상식에 의하여 설정하여 유발도를 추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① 교류유발도의 개념을 원조유발도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든 기준과 그에 따른 요인과 변수를 계량적으로 동질화한다.

② 선정된 요인(변수)은 성격에 따라 교류촉진요인과 교류제한요인으로 분류되나 계량적 분류방법으로는 요인의 값의 크기에 따른 분류기법을 적용한다.

③ 기준 또는 요인의 설명력이 충분하여 통계적 오차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제 ①과 ②는 여러 기준과 요인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고려한 배분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전제는 모형도출의 편의상 사용되나 배분모형의 성격상 실제 배분정책의 운영에서는 각 기준별 정책수립도 가능하다. 전제 ③은 유발도 추정함수 式 (10)이 명시적 선형함수로 표현되었을 때 절편과 통계적 오차항이 삭제됨을 의미하므로 분석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상기의 세 가지 전제하에 특정국에 대한 유발도의 절대치(C)를 산정하는 배분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립된다.⁶⁾

○ 국별 유발도

$$C = \sum_i r_i C_i, \quad \sum_i r_i = 1 \quad \dots\dots\dots (13-1)$$

여기서, i는 기준을 지칭하며, r는 가중치를 표시한다.

○ 기준별 유발도

$$C_i = \sum_j r_{ij} C_{ij}, \quad \sum_j r_{ij} = 1 \quad \dots\dots\dots (13-2)$$

여기서, j는 기준 i의 구성요인 또는 요소를 지칭한다.

○ 요인별 유발도

$$C_{ij} = \sum_k r_{ijk} C_{ijk}, \quad \sum_k r_{ijk} = 1 \quad \dots\dots\dots (13-3)$$

여기서, k는 구성요인 j의 설명변수를 나타낸다.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다 보면 변수간 또는 동일 변수의 적용에 있

6) 국별 상대적 유발도의 산정식은 다음 V章에 제시됨.

어서도 국별 변수 값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에 의한 분석의 오차를 초래할 염려가 있고 일부 변수에 의하여 유발도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체 교류촉진변수와 교류제한변수를 陽・陰數에 의한 구별보다는 변수 값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정책 운용상 편리하다. 따라서 교류촉진(제한)의 성격이 많을수록 높은(낮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등급법을 사용하며 변수 값의 편차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의 값을 일정등급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V. 重點國家選定과 援助配分

V. 重點協力國家選定과 援助配分

1. 選定方法 및 節次

가. 選定對象國家

一般配分基準에 의한 선정대상국가로는 DAC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 低所得國(LICs), 低中所得國(LMICs)과 우리나라가 속하여 있는 高中所得國(UMICs)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거나 경제규모가 큰 국가, 독립국으로 볼 수 없는 국가, 그리고 인구 100만 미만의 소국가를 제외시킨 94개국으로 정하였고 BHN基準은 소국가까지 확대 적용하여 132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주요 經濟協力國家를 파악하기 위한 經濟基準만의 적용은 세계은행의 분류상 高所得國家(HICs)를 제외한 모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特別配分基準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성격상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까지 포함시켰다.

나. 資料 및 等級

본 연구에서 사용한 變數에 대한 주요 計量的 資料源(data source)은 World Bank(1991),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1), Europa Publications(199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1a, b), United Nations(1991), 경제기획원(1991)이며 그 외에도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Country Report(최근) 등 각종 국별자료 및 연구서를 참조하였다. 일부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및

DAC 분류기준의 국가그룹별 평균치와 해당지역 평균치를 고려하여 보충하였다.

변수 값의 편차를 標準化하기 위한 等級化는 총 10등급 기준법을 토대로 一般配分基準의 적용에는 최상위 10등급부터 10개국씩, BHN 基準의 경우에는 13개국씩 차례로 최하위 1등급까지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하거나 미미한 차에 의한 등급구분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인지적 판단도 고려하였다.

다. 基準과 要因의 加重值 附與

配分模型에 따라 국별, 기준별 등급(절대적 유발도)을 산정하려면 변수 뿐만 아니라 각 기준, 요인,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表 V-1, V-2 참조).

交流基準을 구성하는 대외개방도, 교류편리성, 성장성, 시장성, 교류성, 군사력, 원조의존도의 7가지 요소에 각각 가중치 10%를 부여함에 따라 一般配分基準중 교류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을 70%가 되게 하였다. 국제협력의 人道主義的 本質을 대표하는 BHN 기준의 구성요소중 교육, 보건, 문화에는 각각 20%씩, 그리고 구매력에는 40%를 배정하였고, 일반 배분기준에서 BHN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하여 교류기준과 함께 일반배분기준을 구성하도록 하였다(表 V-1 참조).

일반배분기준과는 달리 BHN기준만을 독립시켜 이 기준에 의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방식(식량, 의약품, 기차재 등의 공여)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協力理念의 진정한 具現과 援助效果의 提高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BHN기준에 의한 중점국가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기본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案이고 두 번째 案으

로는 상대적으로 원조를 많이 받지 못한 국가에 더 많은 배분을 하는 것이 配分의 效率性和 衡平性を 제고하리라 판단되어 첫 번째 안에 원조의존도 요인을 20% 추가한 것이다(表 V-2 참조).

特別配分基準의 경우에는 성격상 가중치적 접근보다는 변수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배분을 결정하는 政治的 意思決定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表 V-1〉 一般 配分基準의 加重値 附與

기 준		요 인		요 소	
			가 중 치		가 중 치
일 반 배 분 기 준	교 류 기 준 (0.7)	교류잠재성	0.2	대외개방도	0.1
				교류편리성	0.1
		자구노력도	0.1	성 장 성	0.1
		경 제 성	0.2	시 장 성	0.1
				교 류 성	0.1
		자원 배분효율성	0.1	군 사 력	0.1
		원조 수용성	0.1	원조의존도	0.1
	BHN 기준 (0.3)	기본 생활수준	0.3	교 육 보 건 문 화 구 매 력	0.2×30% 0.2×30% 0.2×30% 0.4×30%

〈表 V-2〉

BHN 配分基準 加重値 附與

기 준	요 인	가 중 치		
		가 중 치		가 중 치
BHN 기준 (Ⅰ)	기본 생활수준	1	교 육	0.2
			보 건	0.2
			문 화	0.2
			구매력	0.4
BHN 기준 (Ⅱ)	기본 생활수준	1	교 육	0.2
			보 건	0.2
			문 화	0.2
			구매력	0.4
	원조 수용성	0.2	원조 의존도	0.2

라. 選定範圍

一般配分基準에 의한 重點國家로는 등급 값의 기준으로 상위 50국을, 그리고 BHN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30(여)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기준별로 선정된 국가를 10개국씩 순차적으로 구분(grouping)하여 일반배분기준에는 5개 그룹(A-E), BHN기준에는 3개 그룹(A-C)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기준별 선정국가의 등급값이 해당 기준의 총 등급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국별유발도를 추정하였다.

2. 重點協力國家의 選定

가. 經濟基準

중점원조 대상국의 선정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經濟協力에 중요한 국가를 교류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기준에 의하여서만 먼

저 선정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經濟基準은 대외개방도, 교류편리성, 성장성, 시장성, 교류성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국별 중요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각 요소에 20%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50개 국가를 선정한 후 <表 V-3>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다섯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대상국가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국가로 형성된 A그룹의 10개국중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의 동아시아 국가가 상위 5개국으로 선정되었고, 다음으로는 서아시아의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중동의 오만과 터키, 그리고 중남미의 칠레 순으로 나타났다. A그룹에 속한 국가, 특히, 상위 5개국의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經濟協力을 集中的으로 추구하여 나가는 대개도국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B그룹 10개국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시아(미얀마), 서남아시아(인디아), 아프리카(모리셔스, 모로코, 이집트), 중남미(도미니카(공)), 유럽(포르투갈), 중동(이란), 그리고 남태평양(PNG)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그룹도 동구국가까지 포함하는 등,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은 동아시아에 대한 집중적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의 주요 국가와 폭 넓은 經濟交流를 추진하여 나가야 하겠다. 즉, 각 지역의 주요국가를 經濟協力の 진출기지로 삼아 해당지역과의 경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 등 동구국가와는 과거 정치체제를 달리하여 경제교류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높은 기술수준과 사회제도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제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기에서 제시된 경제협력대상국은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經濟協力政策에 참고가 되리라 여겨진다.

(表 V-3)

主要 經濟協力 對象國家

A		B		C		D		E	
국 가	등급	국 가	등급	국 가	등급	국 가	등급	국 가	등급
태 국	8.95	미 양 마	5.96	예 멘	5.27	이 라 크	4.94	알제리아	4.53
말레이시아	8.92	PNG	5.96	보츠와나	5.25	루마니아	4.92	레 바논	4.51
인도네시아	8.48	인 디 아	5.75	방글라데시	5.24	몽 고	4.83	세 네 갈	4.43
중 국	7.06	모리셔스	5.73	코스타리카	5.23	에콰도르	4.83	아르헨티나	4.41
필 리 핀	6.90	이 집 트	5.71	리 비 아	5.21	온두라스	4.81	라 오 스	4.39
파키스탄	6.46	도미니카(공)	5.69	브 라 질	5.19	부 탄	4.77	요 르 단	4.39
스리랑카	6.23	베 트 남	5.53	자메이카	5.15	캄보디아	4.74	튀니지아	4.37
오 만	6.22	이 란	5.50	콜롬비아	5.11	멕시코	4.74	카 메 룬	4.37
터 키	6.15	모 로 코	5.29	불가리아	5.05	베네수엘라	4.68	헝 가 리	4.33
칠 레	6.12	포르투갈	5.28	그 리 스	5.01	아프가니스탄	4.55	유 고	4.25

나. 一般配分基準

교류기준과 BHN기준에 각각 70%와 30%의 비중을 배정하여 정립된 一般配分基準을 적용하여 상위 50개국을 선정한 후 다섯 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表 V-4)에 정리하였다. 전체 50개국중 아프리카가 27개, 아시아태평양이 15개, 남미가 6개 그리고 중동이 2개로 나타나 아프리카 국가가 數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나 등급을 기준으로 한 중요성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국가가 중요한 중점협력 대상국가로 부각되었다. 가장 중요한 원조 대상국은 인도네시아(7.65)이고, 다음으로는 태국(6.97), 미얀마(6.76)로 나타나 동남아시아 국가가 상위 3개국을 차지하였다. 그 외 A그룹으로 선정된 국가는 서아시아의 방글라데시(6.71), 부탄(6.60), 파키스탄(6.45)과 동남아시아의 필리핀(6.60), 캄보디아(6.50), 베트남(6.40), 그리고 남태평양의 PNG(6.41)이다.

인디아(6.84)와 중국(6.3)은 각각 우선 서열 3위와 12위에 해당되나 두 국가는 1인당 國民所得이 낮아도 우리나라 보다 경제규모가 크

〈表 V-4〉

一般配分基準 重點協力國家

A		B		C		D		E	
국 가	등급	국 가	등급	국 가	등급	국 가	등급	국 가	등급
인도네시아	7.65	아프가니스탄	6.30	가 나	5.63	나 미 비 아	5.47	니 제 르	5.20
태 국	6.97	예 멘	6.13	코트디브아르	5.62	콜 롬 비 아	5.45	과 테 말 라	5.22
미얀마	6.76	네 팔	6.03	버키나파소	5.61	수 단	5.44	우 간 다	5.22
방글라데시	6.71	나 이 제 리 아	6.00	앙 골 라	5.61	라 오 스	5.43	토 고	5.22
부 탄	6.67	도미니카(공)	5.93	세 네 갈	5.61	말 라 위	5.41	에 쿠 아 돌	5.21
필 리 핀	6.60	말 리	5.80	모 로 코	5.57	이 집 트	5.37	중앙아프리카	5.20
캄보디아	6.50	리 베 리 아	5.79	터 키	5.53	보 츠 와 나	5.35	탄 자 니 아	5.19
파키스탄	6.45	스 리 랑 카	5.75	알 제 리 아	5.52	몽 고	5.34	모 리 셔 스	5.16
PNG	6.41	자 이 레	5.71	케냐	5.51	잠 비 아	5.30	멕시코	5.15
베트남	6.40	카 메 룬	5.68	브 라 질	5.48	감 비 아	5.29	르 완 다	5.05
(인디아, 중국)									

며 피원조국이면서도 원조국으로 그 원조규모가 1990년도 기준으로 각각 1억 8천만불과 1억 1천만불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배분기준의 적용에서는 제외시키되 경제협력의 중요성(중국 4위, 인디아 13위)을 배려하여 두 국가에는 特別配分基準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B그룹에 속한 10개국중 나이지리아, 말리, 리베리아, 자이레, 카메룬의 아프리카 국가가 받을 차지한 반면 서아시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네팔, 스리랑카 3개국이며, 그리고 중동(예멘)과 남미(도미니카(공))가 각각 1개국씩 포함되었다. C그룹에는 브라질과 터키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D그룹에서는 아시아 국가인 라오스와 몽고 그리고 남미의 콜롬비아를 제외한 7개국이 아프리카국가로 나타났다. E그룹에서도 남미의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된 A그룹에 아프리카와 남미국가가 1개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의 국별차별화정책이 아시아지역의 重點協力國에 집중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BHN 基準

BHN 基準에 의한 重點國家의 선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생활 수준만을 고려한 案(1안)과 원조수용성까지 고려한 案(2안) 두가지 案에 의하여 시도되어 각각 <表 V-5>와 <表 V-6>에 그 결과가 제시되었다.

제 1안은 10점 만점중 8점 이상을 보인 36개국을 선정하여 등급기준에 따라 3그룹(A,B,C)으로 구분하였다(表 V-5참조). 36개국중 아

시아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6개국, 남미는 하티티 1개국이며 나머지는 모두가 아프리카 국가인 특징을 보여 아프리카에 기본생활 수준이 미흡한 국가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그룹은 말리(9.8), 버키나파소(9.8), 니제르(9.6) 등 등급값이 9.0을 넘는 1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아시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9.2), 캄보디아(9.0), 부탄(9.0) 그리고 네팔(9.0) 4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등급기준으로 8.5이상 9.0미만의 국가로 구성된 B그룹은 모두 12개국으로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프리카 국가이며, 8.0이상 8.5미만을 기준을 하여 구성한 C그룹 10개국 중에서도 라오스(8.4)를 제외한 나머지가 아프리카 국가이다.

〈表 V-5〉

BHN基準 援助對象國家(I)

A	B	C
말 리 (9.8) ¹⁾	중앙아프리카 (8.8)	하 이 티 (8.4)
버 키 나 파 소 (9.8)	방 글 라 데 시 (8.8)	라 오 스 (8.4)
니 제 르 (9.6)	탄 자 니 아 (8.8)	자 이 레 (8.4)
기 니 아 비 소 (9.6)	모 리 타 니 아 (8.8)	시 에 라 레 온 (8.4)
감 비 아 (9.4)	차 드 (8.8)	적 도 기 니 아 (8.4)
브 런 디 (9.2)	베 닌 (8.8)	코 모 로 스 (8.2)
지 브 티 (9.2)	앙 골 라 (8.8)	수 단 (8.2)
아 프 가 니 스 탄 (9.2)	모 잠 비 크 (8.8)	세 네 갈 (8.2)
소 말 리 아 (9.0)	토 고 (8.8)	리 베 리 아 (8.2)
캄 보 디 아 (9.0)	르 완 다 (8.8)	잠 비 아 (8.0)
부 탄 (9.0)	이 디 오 피 아 (8.8)	
우 간 다 (9.0)	말 라 위 (8.8)	
네 팔 (9.0)		
14개국	12개국	10개국

註) 1. ()은 등급을 표시함

제 2안은 등급값 9.0이상의 30개국을 선정하여 3그룹으로 구분하였다(表 V-6참조). 두 가지 안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제 2안의 미안마가 제 1안의 자이레를 대체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2안의 국가가 제 1안의 서열 30위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제 1안에서 말리, 버키나파소, 니제르, 기니아비소, 기니아, 잠비아, 브룬디, 지브티,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상위 등급순 10개국은 차례로 5,4,6,9,8,10,12,1,2,21위로 변동되었다. 제 1안에서 8,9,11위를 기록했던 지브티(11.05), 아프가니스탄(11.0), 캄보디아(10.95)가 상위 3위를 차례로 차지하여 국제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3개국이 상대적으로 援助를 받지 못하여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 1안보다는 제 2안에서 선정한 국가를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 대상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제 2안의 30개국 중 1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 1안의 상위 30위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 2안에 國際的 視角에서의 援助衡平度를 고려하였으므로 제 2안의 국별 중요도(서열)가 원조수요의 現實性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表 V-6)

BHN基準 援助對象國家(Ⅱ)

A	B	C
지 브 티 (11.05) ¹⁾	a 부 탄 (9.85)	소 말 리 아 (9.3)
b 아프카니스탄 (11.0) ²⁾	브 런 디 (9.75)	르 완 다 (9.3)
a 캄 보 디 아 (10.95)	우 간 다 (9.75)	토 고 (9.3)
버 키 나 파 소 (10.45)	a 방 굴 라 데 시 (9.45)	하 이 티 (9.25)
말 리 (10.25)	b 네 팔 (9.45)	시 에 라 레 온 (9.2)
니 제 르 (10.25)	차 드 (9.35)	탄 자 니 아 (9.2)
앙 골 라 (10.2)	중앙 아프리카 (9.35)	이 디 오 피 아 (9.15)
기 니 아 (10.1)	모 리 타 니 아 (9.35)	모 잠 비 크 (9.05)
기 니 아 비 소 (10.1)	베 닌 (9.35)	말 라 위 (9.05)
잠 비 아 (9.9)	a 미 얀 마 (9.32)	라 오 스 (9.0)

註) 1. ()은 등급을 표시함.

2. a와 b는 일반배분 기준의 A그룹과 B그룹에 각각 해당되는 국가임.

그리고 BHN基準에 의한 원조대상 국가 중에서도 일반배분기준의 상위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방글라데시(A), 미얀마(A), 부탄(A), 캄보디아(A), 네팔(B)에는 BHN基準을 적용하기 보다는 一般配分基準을 적용하되, BHN基準까지 고려한 집중적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一般配分基準을 근간으로 BHN基準을 추가적이고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라. 特別配分基準

이 基準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외교 등 計量化가 어렵거나 모든 개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要因과 變數중 원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강구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요인 또는 변수에 따라 대상국가를 선정하고자 한다 <表 V-7 참조>.

첫째, 국제정치 및 외교상황을 고려한 政治的 決定이 고려된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도국은 캄보디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캄보디아에 軍派遣도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UN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선거관리 요원을 파견하였다. 캄보디아는 본 연구에서 일반배분기준의 A그룹에 선정되어 있음을 상기하여 추가적 원조배분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으면 한다.

둘째, 비록 우리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베트남에 대한 군파견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歷史性에 대한 인식과 6.25동란에 UN군으로 참여한 이디오피아, 필리핀, 터키 등에 보답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베트남에는 파병 뿐만 아니라 많은 民間人(기술자도 포함)도 참여한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전쟁중 파괴된 시설의 복구사업이나 한국인 2세 복지향상 등 많은 協力事業에 베트남政府의 적극적인 協助를 기대할 수 있다.

〈表 V-7〉

特別基準對象國家

요 인 (변 수)	국 가
외 교 정 책	캄 보 디 아
역 사 (군 파 견)	베 트 남 UN군 참 여 국 가
경 제 협 력	중 국, 인 디 아, 멕 시 코
과 학 기 술 도 입	유고,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CIS
문 화 (인 종)	몽 고
기 지 원 국 가	기 지 원 국 가

셋째, 一般配分基準의 상위그룹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經濟規模가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이유로 제외된 중국과 인디아에 대한 원조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중국과 인디아는 經濟基準에 의한 주요 경제협력대상국가 50개중 각각 4위와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單純供與的 援助보다는 우리나라와 經濟交流 擴大를 목적으로 한 원조정책의 수립이 제안된다. 특히 이들 국가의 면적이 매우 방대함을 고려하여 우리민족 밀집지역과 같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창설됨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특별배려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과거 社會主義를 표방했던 國家에 대한 원조정책이다.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라 舊소련을 대표하는 CIS(독립국가연합) 및 동구권 국가는 현재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체제의 뿌리가 너무 깊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체적으로 基礎科學水準이 상당히 높은 반면 消費財 생산에 필요한 應用技術은 발달되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구조와는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점을 인식할 때 互惠의 次元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성을 갖고 있는 경제제도 및 발전경험, 응용기술 등을 원조의 수단으로 제공하되 우리나라가 부족한 기초과학 기술을 전수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문화 및 인종이 유사하여 정서적으로 同質性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인 몽고에 대한 특별고려가 제안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며, 중국과의 공식적 외교관계도 최근(1992)에 수립되어 몽고와의 교류가 빈번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몽고와의 관계는 동북아시아의 國際政勢 변화와 함께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長期的 視角에서 몽고에 대한 원조가 고려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기 지원국가에 대한 援助의 連續性도 중요한 배분요인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확고한 원조목표와 이념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를 실시해 오지 못하였다고는 해도 현재 지원중인 국가에 대한 원조의 순간적인 중단은 外交的 信義상 어려우리라 사료된다. 원조목표와 이념의 구현을 위한 원조재원의 효율적 배분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기 지원국가중 중점대상 국가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원조는 일시에 중단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거나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에 의한 별도의 限時的 援助政策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 國別援助配分

일반배분기준과 BHN기준에 따라 國別等位를 정하여 각 기준별로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장기적인 원조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일반배분기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절에서는 일반배분기준에서 선정한 50개 중점국을 대상으로 국별 상대적 등급값, 즉, 국별유발도를 산정함으로써 국별배분방정식 式(11) 또는 정책결정방정식 式(12)에 따른 원조배분정책에 관하여 고찰하고 몇 가지 원조배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별유발도는 배분모형 式(13)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국의 절대적 유발도 또는 등급(C_i)의 相對的 比重度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별유발도(θ_i)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theta_i = \frac{C_i}{\sum C_i} \dots\dots\dots(14)$$

式(14)에 의하여 산정된 국별유발도에 의한 援助配分案을 <表 V-8>에 제 1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룹별로 비중도를 보면 A, B, C, D, E의 각 그룹에 대한 援助比重度는 순차적으로 23.32%, 20.54%, 19.38%, 18.72%, 18.06%로 그룹별 差別化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열 최상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총원조의 2.66%, 최하위국가인 르완다가 1.7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國別差別化는 미미하다고 여겨진다.

國別差別化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중점국가 선정과정에서 10등급에 의한 변수값의 등급화는 모든 대상국 94개국에 적용되었지만 상위 등급을 갖는 50개국가만을 중점국가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둘째, 명시적 교류유발함수 式(7)을 정의할 때 분석의 편의상 規模에 대한 一定還元(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집중지원에 의한 規模에 대한 增加的 還元(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이 상당한 수준의 원조규모까지는 적용된다고 사료되므로

配分の 效率性を 제고하기 위하여 IRS를 도입한 配分案을 상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式(1) 또는 式 (7)에 IRS를 직접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겠으나 실행적 배분원칙의 도출이 쉽지 않고 가중치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용의 편의상 국별 등급 값에 自乘法을 적용하여 國別差別化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따라서 式(14)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theta_i = \frac{C_i^n}{\sum C_i^n} \quad , \quad n \geq 1 \dots\dots\dots (15)$$

여기서 n은 自乘數로 IRS의 크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本研究에서는 n을 임의로 3, 5, 7, 10으로 정하여 순차적인 결과를 제2안~제5안으로 정리하여 <表 V-8>에 제시하였다(제 1안은 n이 1인 경우에 해당된다). 自乘數 3을 적용한 제 2안에서는 A그룹에 속한 국가의 평균비중이 3.1%로 나타나 제 1안의 2.3%보다 약 30%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 E그룹의 경우에는 약 20%정도 하락했음을 보이고 있어 상위 중점국가에 대한 援助配分の 集中性이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自乘數 10을 적용한 제 5안은 더욱 뚜렷한 집중효과를 보이고 있다. 最上位國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중 19.5%를 포함한 A그룹의 10개국에 대한 비중이 66%나 되는 반면 E그룹의 비중은 4.2%로 크게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규모(1992년 현재 약1억불)와 국별배분을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IRS가 충분히 작용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總援助効果의 提高를 위하여 제 5안과 같은 높은 집중도의 국별차별화 정책이 제안되나, 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在의 配分政策이 제 1안 내지 제 2안과 흡사하여 제 5안으로의 급격한 정책변경은 많은 부작용도 발생시키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差別化를 加速시켜 나가되 제 3안까지는 조속한 시기내에 도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表 V-8〉

國別援助分配案

(단위 : %)

구 분	서 열	국 가	1안	2안	3안	4안	5안
A	1	인도네시아	2.66	4.33	7.48	11.67	19.50
	2	태국	2.42	3.33	4.68	6.05	9.98
	3	미얀마	2.35	3.17	4.04	4.92	7.65
	4	방그라테시	2.33	3.12	3.89	4.67	5.68
	5	부탄	2.32	3.02	3.78	4.49	4.97
	6	필리핀	2.29	2.86	3.58	4.16	4.46
	7	캄보디아	2.26	2.83	3.29	3.70	3.78
	8	파키스탄	2.24	2.77	3.19	3.54	3.55
	9	PNG	2.23	2.71	3.09	3.38	3.32
	10	베트남	2.22	2.61	3.06	3.34	3.26
소 계			23.32	30.75	40.09	49.91	66.15
B	11	아프가니스탄	2.19	2.51	2.83	2.99	2.78
	12	예멘	2.13	2.31	2.48	2.48	2.14
	13	네팔	2.09	2.25	2.27	2.19	1.79
	14	나이지리아	2.08	2.22	2.22	2.12	1.71
	15	도미니카(공)	2.06	2.05	2.10	1.97	1.54
	16	말리	2.02	2.01	1.87	1.68	1.22
	17	리베리아	2.01	2.00	1.85	1.65	1.20
	18	스리랑카	2.00	1.95	1.79	1.57	1.11
	19	자이레	1.98	1.92	1.73	1.50	1.04
	20	카메룬	1.98	1.86	1.69	1.46	1.00
소 계			20.54	21.08	20.83	19.62	15.53
C	21	가나	1.96	1.84	1.61	1.36	0.90
	22	코트디부아르	1.95	1.83	1.60	1.35	0.89
	23	버키나파소	1.95	1.82	1.59	1.34	0.88
	24	앙골라	1.95	1.82	1.59	1.33	0.88
	25	세네갈	1.95	1.81	1.58	1.32	0.87
	26	모로코	1.94	1.78	1.54	1.27	0.82
	27	터키	1.93	1.74	1.47	1.20	0.75
	28	알제리아	1.92	1.73	1.46	1.18	0.74
	29	케냐	1.92	1.72	1.46	1.18	0.74
	30	브라질	1.91	1.70	1.42	1.13	0.70
소 계			19.38	17.79	15.31	12.66	8.18

구 분	서 열	국 가	1안	2안	3안	4안	5안
D	31	나미비아	1.90	1.68	1.40	1.12	0.69
	32	콜롬비아	1.90	1.67	1.38	1.09	0.66
	33	수단	1.89	1.66	1.37	1.08	0.65
	34	라오스	1.89	1.65	1.35	1.06	0.64
	35	말라위	1.88	1.63	1.32	1.03	0.61
	36	이집트	1.87	1.59	1.27	0.98	0.56
	37	보츠와나	1.86	1.57	1.25	0.95	0.55
	38	몽고	1.86	1.56	1.24	0.95	0.54
	39	잠비아	1.84	1.53	1.19	0.89	0.53
	40	감비아	1.84	1.52	1.18	0.88	0.50
소 계			18.72	16.07	12.95	10.02	5.92
E	41	니제르	1.82	1.48	1.13	0.83	0.48
	42	과테말라	1.82	1.47	1.11	0.81	0.46
	43	우간다	1.81	1.47	1.11	0.81	0.46
	44	토고	1.81	1.46	1.10	0.80	0.46
	45	에콰도르	1.81	1.46	1.10	0.80	0.44
	46	중앙아프리카	1.81	1.45	1.09	0.79	0.42
	47	탄자니아	1.80	1.44	1.07	0.77	0.40
	48	모리셔스	1.79	1.42	1.05	0.74	0.38
	49	멕시코	1.79	1.41	1.04	0.73	0.38
	50	트완다	1.78	1.37	1.02	0.72	0.36
소 계			18.06	14.45	10.81	7.79	4.24
총 계			100	100	100	100	100

VI. 國別 重點支援 方向

VI. 國別 重點支援 方向

세 基準에 의한 重點國家를 선정하였으나 一般配分基準의 중점협력 국가에 국한하여 수원국의 성격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國別質的差別化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이유로는 일반배분기준이 협력이념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의 중점국가에 대한 지원방식도 협력목표인 교류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되어야 하나, BHN基準의 국가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원국의 생활실정을 파악하여 식량, 보건, 교육 등의 基本生活水準을 충족시키는 단순공여적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特別配分基準의 국가에는 특정요인에 적합한 지원방식을 고려하거나 一般配分基準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배분기준의 중점국가만을 經濟發展 段階別로 재구성하여 적합한 원조방식과 지원분야를 상정하기로 한다.

1. 發展段階別 國家區分

가. 國家區分の 基準⁷⁾

經濟成長의 일반적인 發展經路(development path)를 需要차원에서 살펴보면 흡수능력의 부족 → 흡수능력의 확대 → 수입대체의 확대 → 수출증가의 단계적 발전양상으로 전개되며, 성장주기(growth cycle)로 설명하면 개도국은 저성장기(1~2%) → 중성장기(2.5%~4%) → 고중

7) 발전단계 구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일본의 국제개발센터(1988)나 Meier(1985)를 참조하기 바람.

성장기(4.5%~5.5%) → 고도성장기(6% 이상)를 거쳐 선진국 진입의 전단계인 성숙기에 접어들게 된다.

상기의 발전과정에서 산업구조, 무역구조, 생산요소시장, 기술수준도 발전단계별로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개도국의 발전과정을 4단계(phase)로 분류하여 각 경제지표별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발전초기단계의 産業構造는 農業과 傳統産業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製造業의 기여도는 10%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공업 중심이었던 工業化가 시작되면 공산품에 대한 소득탄력도가 농산물의 경우보다 높고 공업부문의 기술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공업부문의 성장율이 농업부문의 성장율보다 높게 나타나 제조업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하게 된다. 공업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무역구조, 생산요소시장, 기술수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貿易構造는 제 1단계에서 농산물 등 1차산품과 제조업의 전통제품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한편 비내구 소비재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제 2단계에서는 1차산품과 전통제품의 수출이 강화되면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비내구재의 輸入代替가 시작된다(제 1차 수입대체). 제 3단계에서는 전통제품의 수출비중은 감소되나 기술과 자본의 축적으로 경공업제품 등의 비내구재 수출이 확대되고(제 1차 수출대체), 비내구재 및 중간재의 수입대체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제 2차 수입대체). 제 4단계에서는 내구소비재와 중간재 뿐만 아니라 기계류 등의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입대체가 일어나고(제 3차 수입대체) 수출도 경공업제품에서 전자제품 및 자본재로 대체된다(제 2차 수출대체).

경제발전에 따라 勞動市場과 技術水準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공업화의 진전으로 제 2단계에서는 농업부문의 잠재실업이 섬유업 등의

노동집약적 공업부문에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기술이 축적된다. 제 3-4단계에서는 공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공업부분의 노동력 흡수능력도 팽창되어 노동공급의 과잉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기술수준면에서도 제 3단계에서는 근대기술과 전통기술의 결합 및 부분적 대체가 일어나며 제 4단계에서는 근대기술의 보급이 확산되고 자본·기술집약적 기술이 도입되어 발전하게 된다.

개도국의 발전단계(development phase)의 성격을 각 지표별로 일반화하여 <表 VI-1>에 제시하였다. 前章에서 일반배분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중점협력국가를 단계별 지표에 따라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원조방식과 지원분야를 선정하여야겠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발전단계별 국가의 분류는 각 국의 자연조건, 사회제도, 경제정책등도 충분히 감안하여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發展段階別 重點協力國의 區分

一般配分基準에 의하여 선정된 50개의 重點協力國家를 각 그룹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表 VI-2>에 제시하였다. 제 4단계는 선발개도국 또는 중진국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4단계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상기 국가중 1개국도 없으나 브라질과 멕시코가 제 4단계에 부분적으로 진입되어 있는 국가로 판단되었다. 제 4단계에 있는 국가는 이미 자립성장이 가능하며 우리나라가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이 매우 한정된다. 각 단계별 국가수는 제 1단계 28국, 제 2단계 14국 그리고 제 3단계 8국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은 초기발전단계에 있는 국가가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점협력국의 선정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서 발전경험을 충분하게 이전시킬 수 있도록 대상 개도국의 성격을 고려한

〈表 VI-1〉

發展段階別 開途國 區分の 基準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수 요	• 흡수능력부족	• 흡수능력확대	• 수입대체의 확대	• 수출의 증가
성 장 도	• 저성장	• 중성장	• 고중성장	• 고도성장
산 업 구 조 (제조업/GDP)	• 농업·전통산업이 중심 (10% 미만)	• 농업·전통산업의 지속적 발전 • 경공업의 도입 (10~17% 미만)	• 식량자급달성 •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크게 발달 (17~25% 미만)	• 전통부문에 대한 의존도 하락 •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 비중 증대 (25% 이상)
무 역 구 조 (제조업 수출비중)	• 1차산품·전통산업 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10% 미만)	• 제1차 수입대체 -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비내구재 수입감소 (10~30%)	• 제2차 수입대체 - 비내구재 수입감소 - 중간재 수입감소 • 제1차 수출대체 - 경공업 제품 수출증대 (30~50%)	• 제3차 수입대체 - 내구재 수입감소 • 제2차 수출대체 - 자본재 수출시작 - 전자조립 제품 (50% 이상)
노 동 시 장	• 심각한 잠재실업	• 잠재실업의 해소시작	• 노동공급 과잉 완화시작	• 노동공급과잉 해소
기 술	• 전통적 노동집약적 기술	• 근대적 노동집약적 산업 기술의 도입 실시	• 근대기술과 전통기술의 결합 및 부분적 대체 • 노동집약도의 저하	• 근대기술 보급과정의 완료 • 자본·기술집약적 기술의 도입 및 발전

결과임을 의미한다.

A 그룹 10개국중 제 1단계에 있는 국가로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PNG, 베트남이며, 제 2단계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제 3단계에는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는 제 3단계에 부분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 그룹 국가중 아프가니스탄, 예멘, 네팔, 말리, 리베리아, 자이레의 6개국이 제 1단계로, 도미니카, 스리랑카, 카메룬, 나이지리아 4개국이 제 2단계로 분류되었고 제 3단계로 분류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 그룹이 비교적 각 단계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제 1단계에는 가나, 버키나파소, 앙골라, 알제리아 4개국, 제 2단계에는 코트디브아르, 세네갈, 모로코, 케냐 4개국 그리고 제 3단계에 터키와 브라질 2개국이 분류되었다.

D 그룹에서는 나미비아, 수단, 라오스, 말라위, 보츠와나, 잠비아가 제 1단계로, 이집트, 잠비아, 몽고가 제 2단계로, 그리고 콜롬비아가 제 3단계로 분류되었으며, E 그룹에서는 니제르, 우간다, 토고, 중앙아프리카, 탄자니아, 르완다의 6개국이 제 1단계, 과테말라와 에쿠아돌이 제 2단계로, 모리셔스와 멕시코는 제 3단계로 분류되었다.

〈表 VI-2〉

重點國家 그룹 및 發展段階別 國家區分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A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PNG, 베트남	인도네시아 ¹⁾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B	아프카니스탄, 예멘, 네팔, 말리, 자이레, 리베리아	도미니카(공) 스리랑카 카메룬 나이지리아	
C	가나, 버키나파소, 앙 골라, 알제리아	코트디브아르 세네갈 모로코 케냐	터키 브라질 ²⁾
D	나미비아, 수단, 라오 스, 말라위, 보츠와나, 감비아	이집트 잠비아 몽고	콜롬비아
E	니제르, 우간다, 토고, 중앙아프리카, 탄자니 아, 르완다	과테말라 에쿠아돌	모리셔스 멕시코 ²⁾
계	28	14	8

註) 1.인도네시아는 제 3단계에 부분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됨.

2. 브라질과 멕시코는 부분적으로 제 4단계에 진입되어 있음.

2. 重點支援方向

각 단계별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經濟開發課題를 수원국의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조의 重點支援分野와 援助方式을 상정

하기로 한다. 제 1단계에서는 미비된 각종 경제사회 제도를 마련하여 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중점 개발 분야로 1차산업 또는 1차산품의 가공산업을 선정하여 1차산품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 등의 소비재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비내구재의 수입대체 공업화를 촉진하여 제 2단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여겨진다. 제 2단계에서는 근대기술의 보급을 확대시켜 경공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내구재 생산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종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며 시범적 공업단지(industrial zone)등을 조성하여 공업화의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 3단계에서는 내구재 수입대체 공업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중급기술의 도입을 꾀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기반을 제도적으로 재정비하고 성장과정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상기와 같은 각 단계별 중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조 분야 및 원조방식을 국별로 차별화하는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또한 상위그룹(A, B)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A 및 B 그룹의 국가에는 개발조사, 프로젝트사업, 기술협력, 기자재 공여 등의 다양한 원조방식을 혼합하여 발전단계별로 지원분야를 달리하는 종합적 지원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나 하위그룹(C, D, E)의 국가에는 원조규모를 고려하여 원조방식과 지원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각 그룹에 대한 원조방식 및 단계별 지원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表 VI-3>에 정리하였다.

〈表 VI-3〉

重點國家 그룹 및 發展段階別 支援方案

그룹	원조방식	1 단계	2 단계	3 단계
A & B	개발조사	• 자연자원 기초조사 • 기초 기간시설 - 농업도로 - 기간도로 - 수상도로 - 수리시설 등 • 국토개발계획	• 자연자원 개발 • 소규모공업단지 • 유통단지 • 기초 기간시설 - 기간도로 - 항만 등 • 국토개발계획	• 자연자원 개발 • 공업단지 • 기간시설 - 발전 등 에너지 시설 - 기간도로 - 항만 등 • 국토 개발 계획
	프로젝트사업	• 기초교육시설 • 보건시설 • 식품가공 시설 • 경지정리 • 지하수 개발	• 기초교육시설 • 보건시설 • 농수산물유통단지 •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 • 농촌공업단지 조성	• 고등교육시설 • 보건시설 • 도시환경 개선 • 시범공업단지
	기술협력	• 기초기술 이전 - 농수산업 - 식품가공 및 유통 • 가족계획 • 경제발전 계획 • 각종제도 입안 및 정비	•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기술 이전 - 섬유, 신발 등 • 중간기술 이전 - 비내구재 생산 기술 - 단순조립 기술 • 가족계획 • 경제발전계획 • 각종제도 정비	• 기술훈련원 운영 • 비교우위하락 기술이전 - 내구재 중심의 조립기술 • 각종제도 개선
	기자재 등 공여	• 기초기자재 공여 - 농수산업용 기구 (농기계, 그물, 임업용 톱 등) - 지하수 개발기구 - 식품 가공기계 • 보건기자재 - 의약품 포함 • 피임기구 • 교육기자재	• 중간기자재 공여 - 컴퓨터 - 단순 가공기계 등 • 보건기자재 • 교육기자재	• 기술교육 기자재 및 부품 • 중간기자재 공여 - 컴퓨터 - 가공기계 등
	기타	• 의료단 • 환경보전사업 • 청년봉사단 • 협력축진단 • 현지사무소 • 칸쥬리프로그래밍	• 청년봉사단 • 환경보전사업 • 협력축진단 • 현지사무소 • 칸쥬리프로그래밍	• 청년봉사단 • 환경보전사업 • 협력축진단 • 현지사무소 • 칸쥬리프로그래밍

그룹	원 조 방 식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C, D & E	개발조사	• 자연자원 기초조사 • 기초기간시설	• 자연자원 개발 • 소규모 공업단지 • 기초기간시설	• 자연자원 개발 • 기간시설
	프로젝트	• 기초교육시설 • 기초생산시설	• 기초교육시설 • 기초생산시설	• 고등교육시설 • 시범공업단지
	기술협력	• 기초기술 이전 - 농수산업 • 가족계획	• 중간기술 이전 - 단순조립기술 • 가족계획	• 비교우위 하락기술 이전 - 내구제 중심의 조립기술
	기자재 등 공요	• 기초기자재 - 농수산업용 기구 - 지하수 개발도구 • 피임기구	• 중간기자재 - 컴퓨터 - 단순 가공기계 등	• 중간기자재 - 컴퓨터 - 가공기계 등
	기타	• 의료단 • 환경보전사업 • 청년봉사단	• 청년봉사단 • 환경보전사업	• 환경보전사업

開發調査分野는 각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조사를 요하거나 향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연계되어 수행될 수 있는 부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自然資源의 경우 제 1단계에서는 직접개발할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開發費用이 지나치게 높아 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연자원 부존도 및 이용가능성 등 기초적 조사만 수행하고, 제 2·3단계에서는 자원개발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제 1단계의 특성상 도로, 농업생산기반 등의 기초 基幹施設에 대한 개발조사가 제안되며 제2·3단계에서는 유통 및 공업단지와 대규모의 기간시설에 대한 개발조사가 고려된다. 그리고 A 그룹에 속하는 매우 중요한 중점협력국에는 국토개발계획등의 종합적인 자원활용에 대한 장기개발조사 (5년 프로그램 등)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프로젝트형 사업은 제 1단계에 기초교육시설(국민학교), 보건시설, 식품가공시설, 지하수 개발 등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켜 나가는 프

로젝트가 바람직하다. 제 2단계에서는 농수산물 유통단지나 소규모 공업단지를 示範的으로 造成하는 프로젝트는 원조효과를 상당히 제고 하리라 여겨진다. 제 3단계에서는 고등교육시설(전문대학 이상)과 都市環境 改善을 위한 프로젝트가 제안된다. 특히,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는 제 3단계의 성장과정에서 도시에 인구집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반면 사회기반 시설은 부족하여 도시환경이 무척 열악 해지는 현상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으로 도시내의 프로젝트는 수원국 국민에 대한 援助의 弘報効果도 매우 크게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발조사와 연계된 프로젝트의 실시가 강구된다. 원조예산의 규모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개발조사 결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정되는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사업 추진은 개발조사를 可視化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술협력은 초기단계에는 기초기술을 이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교류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비교우위기술 중 개도국의 산업수준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A 그룹 중 제 1·2단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에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제 3단계에 있는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에는 技術訓練院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술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면 한다.

기자재 공여사업은 각종 프로젝트나 기술협력과 연계하여 실시해야 원조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계별 품목은 제1단계에서는 기초기자재를, 제2·3단계에서는 중간기자재 및 부품 등을 지원하여야겠다. 그러나 단순공여는 성격상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면 한다. 특히 기자재 공여사업은 무상원조의 대표적 원조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BHN기준의 중

점협력국에 대해서는 보건 기자재, 피임기구, 교육기자재, 식량 등의 기본생활수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청년봉사단 및 의료단은 중점협력국가에 우선순위를 두어 수원국의 수요에 따라 파견시켜야 한다. 자연환경의 파괴를 억제하고 복원하는 사업도 폭 넓게 고려되었으면 한다. 주요 협력국가(A, B)에 대해서는 現地事務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원조사업의 긴밀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의 발굴과 효율적 원조방식의 선정을 위하여 協力促進團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협력촉진단은 향후 원조규모의 확대에 따라 주요 국가에 대한 칸츄리프로그래밍 및 원조강화정책을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국별 프로그램 검토보고서 등)도 수행하여야겠다.

本節에서는 援助對象國의 발전단계별 特性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支援分野와 支援方式을 원조수단별로 달리하는 國別質的政策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본 것에 불과하므로 충실한 國別研究를 통하여 각 국의 文化的 그리고 社會的 特性까지 고려하여 세분화된 지원분야를 발굴하고 가장 효율적인 援助手段과 援助方式을 동원하는 勞力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원조수단에서 수원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원조방식은 상호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며 원조효과도 상승시키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입장보다는 受援國의 입장에서 지원분야와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協力理念의 眞情한 具現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援助는 受援國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援助源 가운데 하나이며 總開發財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受援國의 개발계획추진에 主導者로서가 支援者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VII. 結論 및 要約

VII. 結論 및 要約

우리나라의 國際協力은 지난 '60년대 초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協力事業은 '80년대 초 대통령의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순방 이후 對開途國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각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격히 팽창된 결과, 國際社會에서의 지위가 격상되자 이에 상응하는 對開途國 經濟開發에 대한 역할분담 강화를 요구받게 되었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증대되어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설치(1987), 한국국제협력단의 창설(1991) 등 협력기반을 구체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協力規模는 1992년 현재 GNP의 0.04%인 약 1억불 정도로 아직 미미한 형편이고 최근 대내외적 경제상황도 악화되어 국제협력 여건도 당분간 크게 개선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격상에 따라 人類의 共同繁榮이라는 국제윤리에 의거하여 협력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현실 또한 수용하여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따라서 本研究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타개하여 우리의 協力與件을 개선하며 종국적으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協力目標과 理念을 설정하고 이에 준한 協力財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국제협력의 의미를 국제경제학적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協力理念을 '國際倫理와 相互依存性을 인식한 共同繁榮의 追求'로, 이념구현의 실행적 목표로는 對開途國 資本 및 技術移轉의 확대를 설정하였다. 협력이념과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配分原則을 도출하였고, 人道主義와

配分原則에 부합되는 配分基準과 要因을 구성하여 重點協力 國家를 基準別로 선정하였다. 重點協力國의 선정은 간략하면서도 援助의 本質的 要素가 모두 반영되는 종합적인 國別 배분정책의 향후 수립을 위하여 세 기준별로 분리하여 시도하였다.

첫번째는 모든 開途國에 우리나라의 援助理念을 적용하는 一般配分基準으로서 교류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요인과 援助의 본질인 人道主義的 요인을 모두 고려한 기준이며, 두번째 기준은 순수하게 人道主義的 要因만을 고려한 BHN基準이고, 세번째는 일률적으로 모든 開途國에 적용하기 어려운 要因중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하는 特別配分基準이다.

각 기준별로 선정된 重點協力國에 대한 지원방식의 差別化에 대해서도 一般配分基準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一般配分基準에 의하여 선정된 50개국을 등급순으로 10개국씩 5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國別量的政策인 國別援助配分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經濟發展 段階別로 중점협력국을 재구성하여 지원방식을 差別化하는 國別質的政策에 관하여서도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本研究는 協力團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兩者援助의 배분방식과 지원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 불과하므로 향후 협력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과의 연계 및 NGO와의 협조를 포함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원조의 차별화정책에 대한 후속연구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세 기준에 의하여 분리된 國別援助政策을 本研究에서 제시하였지만 세 기준을 통합한 綜合的 政策이 시급히 마련되어 체계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하겠다. 즉, 정책결정방정식 式 (12)에서 논하였듯이 기준별 援助豫算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차별지원방식도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기준에 대한 보충적인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說明力을 제

고할 수 있는 구성요소나 變數의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며 각 變數에 대한 최신자료를 계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協力政策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本研究에서 제시한 내용은 政府開發援助의 國別差別化政策에 대한 하나의 構想的 意見이므로 실제 정책운영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差別化政策의 기초적 틀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協力事業의 추진에 참조하면서 韓國型國際協力模型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더욱 견고한 差別化政策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향후 꾸준히 傾注되었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 경제기획원(1991), “開途國 經濟協力 統計”
- 김학수(1990),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方案,” 對外經濟
政策研究院
- 나원찬·송하울(1989),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開發援助政策,” 産業研
究院
- 서울국제컨설팅(1989), “對外經濟協力基金 支援對象事業의 選定方案”,
서울국제컨설팅 주식회사
- 심의섭(1991), “對開途國 投資協力과 中小企業의 役割,” 대한상공회의
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한국수출입은행(1990), “카나다 國際開發廳(CIDA)의 業務活動 및 制
度調査”
-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1984), “Report of the Com-
mittee to Review the Australian Overseas Aid Program”
- Clark, P.G.(1972), “American Aid for Development,” Praeger, New
York
- Europa Publications(1990), “Europa World Year Book I, II”
- International Monetary Fund(1991a),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_____ (1991b),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Imbeau, L.M.(1989), “Donor Aid-The Determinants of Development
Allocations to Third World Countries:A Compartive Analysis,”
Dater Lang
- Karmacharya Binod(1989), “Sources of Aggregate Bilaterral Trade
Flows in a Multi-country World:A Case Study of Selected Asian

- Developing Countr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chool of Economics, Ph. D. Dissertation
- Lewis, W.A.(1972),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George Allen, London,
- Meier, Gerald(1985),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1991), “Development Cooperation(1991 Report)”
- United Nations(1991),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al Year Book”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1991), “Human Development Report”
- World Bank(1991), “World Development Report:The Challenge of Development”
- 日本 國際開發센터(1988), “類型的 相違를 考慮한 發展國面別 經濟協力形態에 관한 基礎調査”

〈附錄 表 1-1〉

호주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總援助中 %)

1970 ~ 71		1980 ~ 81		1989 ~ 90	
PNG	66.9	PNG	42.9	PNG	26.1
인도네시아	8.2	인도네시아	7.0	인도네시아	8.1
인도네시아	2.2	방글라데시	3.0	태국	3.1
태국	2.0	필리핀	1.9	중국	2.8
말레이시아	1.6	파키스탄	1.8	필리핀	2.6
베트남	1.5	피지	1.7	말레이시아	2.4
파키스탄	0.8	버마(미얀마)	1.6	방글라데시	2.1
라오스	0.6	태국	1.3	피지	1.9
캄보디아	0.6	이집트	1.3	인도네시아	1.5
스리랑카	0.6	말레이시아	1.2	이집트	1.4
피지	0.5	스리랑카	1.0	바누아투	1.3
버마(미얀마)	0.4	탄자니아	1.0	솔로몬제도	1.2
네팔	0.4	솔로몬제도	0.9	이디오피아	1.1
싱가포르	0.3	통가	0.7	모잠비크	1.0
방글라데시	0.3	케냐	0.6	짐바브웨	1.0
나이지리아	0.1	캄보디아	0.6	통가	0.9
한국	0.1	수단	0.6	서사모아	0.8
서사모아	0.1	바누아투	0.5	파키스탄	0.7
잠비아	0.1	서사모아	0.5	라오스	0.6
필리핀	0.1	인도네시아	0.4	탄자니아	0.6
통가	0.1	키리바티	0.4	말라위	0.6
중국	0.1	이디오피아	0.4	스리랑카	0.5
모리셔스	0.1	모리셔스	0.4	키리바티	0.5
말라위	0.1	우간다	0.4	캄보디아	0.4
우간다	0.1	짐바브웨	0.4	모리셔스	0.4
합계	87.8	합계	72.6	합계	63.6
다자원조	10.9	다자원조	21.3	다자원조	26.1
기타	0.8	기타	4.1	기타	6.1
총원조(백만달러)	214	총원조(백만달러)	662	총원조(백만달러)	864

* 자료: OECD(1991)

〈附錄 表 1-2〉

카나다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總援助中 %)

1970 ~ 71		1980 ~ 81		1989 ~ 90	
인 디 아	29.0	방 글 라 데 시	5.0	카 메 룬	3.4
파 키 스 탄	11.0	인 디 아	4.2	방 글 라 데 시	3.2
나 이 지 리 아	2.7	파 키 스 탄	3.7	케 나	2.5
스 리 랑 카	1.9	스 리 랑 카	2.7	가 나	2.5
가 자 나	1.9	탄 자 니 아	2.0	중 국	1.9
알 제 리 아	1.5	케 나	1.8	잠 비 아	1.9
튜 니 지 아	1.5	이 집 트	1.8	코 트 디 브 아르	1.7
니 제 르	1.3	인 도 네 시 아	1.6	인 도 네 시 아	1.7
터 어 키	1.2	카 메 룬	1.5	파 키 스 탄	1.6
모 로 코	1.2	말 리	1.1	짐 바 브 웨	1.4
탄 자 니 아	1.1	잠 비 아	1.0	세 네 갈	1.3
카 메 룬	1.0	가 나	1.0	탄 자 니 아	1.3
세 네 갈	0.9	자 이 레	0.9	인 도	1.3
콜 롬 비 아	0.9	세 네 칼	0.9	자 메 이 카	1.2
자 메 이 카	0.9	자 메 이 카	0.9	자 이 레	1.2
가 이 아 나	0.9	터 키	0.9	모 잠 비 크	1.1
말 레 이 지 아	0.8	말 라 위	0.8	모 로 코	1.1
인 도 네 시 아	0.7	튀 니 지 아	0.7	이 집 트	1.0
케 나	0.6	버 키 나 파 소	0.7	필 리 핀	1.0
베 트 남	0.6	태 국	0.6	태 국	0.9
버 마 (미얀마)	0.6	마 다 가 스 카 르	0.6	이 디 오 피 아	0.9
코 트 디 브 아르	0.5	하 이 티	0.6	페 루	0.8
칠 레	0.5	트 완 다	0.5	말 리	0.8
T & T	0.5	네 팔	0.5	나 이 제 리 아	0.8
우 간 다	0.5	이 디 오 피 아	0.5	니 제 르	0.6
합 계	64.0	합 계	36.6	합 계	37.0
다 자 원 조	22.6	다 자 원 조	37.6	다 자 원 조	27.9
기 타	8.4	기 타	17.7	기 타	24.5
총원조(백만달러)	363	총원조(백만달러)	1143	총원조(백만달러)	2723

* 자 료 : OECD(1991)

(附錄 表 1-3)

프랑스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總援助中 %)

1970 ~ 71		1980 ~ 81		1989 ~ 90	
르 위 니 용	9.7	르 위 니 용	13.0	르 위 니 용	9.1
알 제 리 아	8.8	마 아 니 크	11.7	마 티 니 크	8.3
마 티 니 크	7.0	뉴 카 레 도 니 아	4.2	코 트 디 브 아르	4.0
과 델 루 프	5.7	프랑스령폴리네시아	3.6	뉴 카 레 도 니 아	3.4
모 로 코	2.8	세 네 갈	2.7	과 델 루 프	3.1
코 트 디 브 아르	2.6	코 트 디 브 아르	2.3	세 네 갈	3.0
튀 니 지 아	2.2	가 이 아 나	2.2	모 로 코	2.4
마 아 가 스 카 르	2.2	카 메 룬	2.1	카 메 룬	1.8
가 이 아 나	2.1	알 제 리 아	1.8	마 다 가 스 카 르	1.6
인 도 네 시 아	2.1	튀 니 지 아	1.6	자 이 레	1.6
프랑스령폴리네시아	1.9	중앙아프리카(공)	1.6	중 국	1.5
세 네 갈	1.8	버 키 나 파 소	1.5	인 도 네 시 아	1.4
인 디 아	1.8	브 라 질	1.5	말 리	1.4
가 봉	1.6	과 델 루 프	1.5	가 봉	1.4
카 메 룬	1.5	니 제 르	1.3	콩 고	1.4
차 드	1.5	말 리	1.3	가 이 아 나	1.3
니 제 르	1.4	마 다 가 스 카 르	1.3	이 집 트	1.2
버 키 나 파 소	1.0	이 집 트	1.2	차 드	1.2
지 브 티	1.0	인 도 네 시 아	1.1	알 제 리 아	1.1
이 란	0.9	콩 고	1.1	가 이 아 나	1.1
콩 고	0.8	가 봉	0.9	인 디 아	1.1
이 집 트	0.8	텍 시 코	0.8	버 키 나 파 소	1.0
중앙아프리카(공)	0.8	자 이 레	0.8	베 닌	0.9
베 닌	0.7	인 디 아	0.7	튀 니 지 아	0.9
합 계	65.5	합 계	64.8	합 계	58.3
다 자 원 조	10.2	다 자 원 조	15.2	다 자 원 조	16.2
기 타	16.9	기 타	6.8	기 타	9.9
총원조(백만달러)	1135	총원조(백만달러)	4407	총원조(백만달러)	8805

* 자 료 : OECD(1991)

〈附錄 表 1-4〉

독일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總援助中 %)

1970 ~ 71		1980 ~ 81		1989 ~ 90	
인 디 아	10.7	터 어 키	8.5	터 어 키	4.7
파 키 스 탄	7.3	방 글 라 데 시	6.9	이 집 트	4.0
이 스 라 엘	5.1	인 도	4.1	인 디 아	3.6
인 도 네 시 아	5.0	수 단	3.3	케냐	3.5
터 어 키	4.2	인 도 네 시 아	3.2	중 국	3.1
브 라 질	3.8	탄 자 니 아	3.1	인 도 네 시 아	2.5
모 로 코	3.1	이 집 트	2.2	잠 비 아	2.2
튀 니 지 아	1.9	이 스 라 엘	1.9	가 나	2.2
아 프 가 니 스 탄	1.8	브 라 질	1.8	파 키 스 탄	2.1
나 이 지 리 아	1.7	예 멘	1.4	이 스 라 엘	1.6
칠 레	1.6	페 루	1.4	세 네 갈	1.5
아 르 헨 티 나	1.6	파 키 스 탄	1.4	요 르 단	1.5
이 집 트	1.2	태 국	1.3	자 이 레	1.1
페 루	1.1	튀 니 지 아	1.2	모 로 코	1.1
베 트 남	1.1	소 말 리 아	1.0	마 다 가 스 카 르	1.0
이 란	0.9	케냐	0.9	방 글 라 데 시	1.0
코 트 드 브 아르	0.9	자 이 레	0.9	태 국	0.9
가 나	0.9	가 나	0.8	페 루	0.8
콜 롬 비 아	0.9	포 르 투 갈	0.8	탄 자 니 아	0.8
예 멘	0.8	비 키 나 파 소	0.8	브 라 질	0.8
케냐	0.8	시 리 아	0.8	볼 리 비 아	0.8
태 국	0.7	버 마 (미얀마)	0.8	튀 니 지 아	0.8
버 마 (미얀마)	0.7	말 리	0.7	시 리 아	0.7
탄 자 니 아	0.7	니 제 르	0.7	이 디 오 피 아	0.7
토 고	0.7	콜 롬 비 아	0.7	수 단	0.7
합 계	59.2	합 계	50.3	합 계	43.8
다 자 원 조	22.0	다 자 원 조	25.9	다 자 원 조	25.8
기 타	4.9	기 타	5.9	기 타	8.7
총원조(백만달러)	766	총원조(백만달러)	4226	총원조(백만달러)	7038

* 자 료: OECD(1991)

〈附錄 表 1-5〉

일본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總援助中 %)

1970 ~ 71		1980 ~ 81		1989 ~ 90	
인도네시아	22.9	인도네시아	11.2	인도네시아	12.4
한국	19.8	한국	6.9	중국	7.7
인도아	10.2	태국	5.9	필리핀	5.9
파키스탄	7.9	방글라데시	5.0	태국	5.2
필리핀	4.4	필리핀	4.7	방글라데시	4.1
버마(미얀마)	3.5	버마(미얀마)	4.1	말레이시아	3.2
태국	2.9	파키스탄	3.6	인도아	2.6
대만	2.5	이집트	2.7	파키스탄	2.3
이란	1.4	말레이시아	2.3	한국	2.3
스리랑카	1.3	인도아	2.2	터키	2.1
말레이시아	1.3	스리랑카	1.4	스리랑카	1.9
싱가포르	1.1	자이레	1.3	이집트	1.4
나이지리아	1.1	탄자니아	1.1	나이지리아	1.3
캄보디아	0.9	터키	0.9	케냐	1.2
베트남	0.9	네팔	0.8	브라질	1.1
라오스	0.9	브라질	0.8	볼리비아	1.0
케냐	0.3	케냐	0.8	요르단	0.9
탄자니아	0.2	볼리비아	0.7	가나	0.8
아프가니스탄	0.1	파라과이	0.6	세네갈	0.8
페루	0.1	페루	0.6	자이레	0.8
우간다	0.1	중국	0.4	버마(미얀마)	0.7
브라질	0.1	잠비아	0.4	모로코	0.7
볼리비아	0.1	마다가스카르	0.4	네팔	0.7
네팔	0.1	튀니지	0.4	온두라스	0.6
이디오피아	0.1	예멘	0.4	파라과이	0.6
합계	84.1	합계	59.7	합계	62.0
다자원조	14.9	다자원조	31.5	다자원조	21.8
기타	0.3	기타	2.2	기타	5.4
총원조(백만달러)	555	총원조(백만달러)	3592	총원조(백만달러)	10269

* 자료: OECD(1991)

〈附錄 表 1-6〉

미국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總援助中 %)

1970 ~ 71				1980 ~ 81				1989 ~ 90			
인	디	아	13.9	이	집	트	12.6	이	집	트	16.6
베	트	남	10.5	이	스	라	11.5	이	스	라	12.1
인	도	네	7.8	인	디	아	3.3	파	키	스	2.8
파	키	스	5.0	터	어	키	2.8	엘	살	바	2.7
한		국	4.5	방	글	라	2.2	필	리	핀	2.2
브	라	질	3.6	인	도	네	2.1	온	두	라	1.6
터	어	키	3.6	태	평	양	1.7	방	글	라	1.5
콜	롬	비	3.0	파	키	스	1.4	인	디	아	1.2
이	스	라	1.7	엘	살	바	1.0	수		단	1.2
라	오	스	1.6	페		루	0.9	코	스	타	1.2
태	평	양	1.5	포	르	루	0.9	과	테	말	1.2
모	로	코	1.4	수		단	0.9	자	메	이	1.0
나	이	제	1.3	소	말	리	0.9	태	평	양	1.0
튜	니	지	1.3	케		냐	0.8	케		냐	1.0
테		국	1.1	필	리	핀	0.8	인	도	네	1.0
필	리	핀	1.0	리	베	리	0.7	불	리	비	1.0
도	미	니	0.9	요	르	단	0.7	모	로	코	0.8
칠		레	0.9	니	카	라	0.7	불	리	비	0.8
요	르	단	0.7	스	리	랑	0.7	요	르	단	0.7
불	리	비	0.7	한		국	0.6	페		루	0.6
가		나	0.7	자	메	이	0.6	하	이	티	0.6
페		루	0.5	도	미	니	0.6	자	이	레	0.5
파	나	마	0.5	하	이	티	0.5	파	나	마	0.5
이	디	오	0.5	세	네	갈	0.5	아	프	카	0.5
니	카	라	0.5	모	로	코	0.5	소	말	리	0.5
합		계	68.6	합		계	50.0	합		계	54.3
다	자	원	11.4	다	자	원	30.4	다	자	원	18.6
기		타	11.3	기		타	10.5	기		타	16.7
총원조(백만달러)			3328	총원조(백만달러)			6973	총원조(백만달러)			10409

* 자 료: OECD(1991)

〈附錄 表 1-7〉

영국 政府開發援助의 國家別配分

(總援助中 %)

1970 ~ 71				1980 ~ 81				1989 ~ 90															
인	디	아	20.5	인	디	아	12.1	인	디	아	5.0												
케		나	4.0	방	글	라	메	시	방	글	라	메	시	3.4									
파	키	스	탄	3.6	탄	자	니	아	2.9	케		나	2.8										
나	이	지	리	아	3.5	스	리	랑	카	2.9	나	이	지	리	아	2.3							
말		라	위	3.4	케		나	2.7	말		라	위	2.0										
말			타	3.2	수			단	2.6	파	키	스	탄	2.0									
싱	가	포	르	3.0	짐	바	브	웨	2.6	가			나	1.9									
말	레	이	지	아	2.4	파	키	스	탄	2.3	탄	자	니	아	1.8								
가			나	2.4	잠		비	아	1.9	수			단	1.6									
터		어	키	2.2	터		어	미	1.7	모	잠	비	크	1.5									
스	리	랑	카	2.0	말		라	위	1.3	우		간	다	1.4									
인	도	네	시아	1.6	이		집	트	1.0	세	인	트	헬	레	나	1.3							
잠		비	아	1.5	인	도	네	시아	0.9	중			국	1.1									
보	츠	와	나	1.4	술	로	몬	제	도	0.9	스	리	랑	카	1.0								
술	로	몬	제	도	1.2	우		간	다	0.8	이	디	오	피	아	1.0							
가	이	아	나	1.1	보	츠	와	나	0.8	베			팔	1.0									
피			지	1.1	네			팔	0.7	말	레	이	지	아	0.9								
세	이	첼	레스	0.9	말	레	이	지	아	0.7	짐	바	브	웨	0.9								
자	메	이	카	0.9	바	누	아	투	0.7	인	도	네	시아	0.8									
탄	자	니	아	0.8	버	마	(미	안	마)	0.6	이		집	트	0.6								
브		라	질	0.8	자	메	이	카	0.6	필		리	핀	0.5									
요		르	단	0.8	모		로	코	0.6	가	이	아	나	0.5									
레		소	토	0.7	요		르	단	0.6	보	츠	와	나	0.5									
스	와	질	랜드	0.7	스	와	질	랜드	0.5	태			국	0.4									
합				계	65.6	합				계	48.5	합				계	37.5						
다				자	원	조	18.0	다				자	원	조	31.2	다				자	원	조	41.5
기					타	8.4	기					타	9.9	기					타	12.7			
총원조(백만달러)				629	총원조(백만달러)				2232	총원조(백만달러)				2759									

* 자 료: OECD(1991)

〈附錄 表 1-8〉

총 DAC 회원국의 國家別配分

(總援助中 %)

1970 ~ 71				1980 ~ 81				1989 ~ 90			
인	디	아	11.5	이	집	트	4.2	이	집	트	4.4
인	도	네	시	아	7.2	인	디	인	도	네	시
베	트	남	4.8	방	글	라	데	중	스	라	엘
파	키	스	탄	인	도	네	시	이	스	라	엘
한		국	3.4	이	스	라	엘	인	디	아	2.4
터	어	키	2.5	터	어	키	2.5	방	글	라	데
브	라	질	2.0	탄	자	니	아	필	리	핀	1.8
	PNG		1.8	르	위	니	용	케		냐	1.6
콜	롬	비	아	마	티	니	크	파	키	스	탄
알	제	리	아	파	키	스	탄	르	위	니	용
라	오	스	1.4	수			단	탄	자	니	아
모	로	코	1.4	케			냐	태		국	1.6
튜	니	지	아	태			국	마	티	니	크
나	이	지	리	한			국	터	어	키	1.3
이	스	라	엘	자	이		레	모	잠	비	크
마	티	니	크	스	리	랑	카	세	네	갈	1.1
자	이	레	1.0		PNG			자	이	레	1.0
라	오	스	0.9	필	리	핀	1.0	모	로	코	0.9
태		국	0.9	모	로	코	0.9	잠	비	아	0.9
과	델	루	프	버	마	(미	얀	코	트	디	브
필	리	핀	0.8	잠	비		아	이	디	오	피
이	집	트	0.8	세	네		갈	가			나
캐		냐	0.7	페			루	스	리	랑	카
가		나	0.7	튜	니	지	아	수			단
칠		레	0.7	브	라	질	0.6	카	메	룬	0.7
합		계	55.3	합		계	42.0	합		계	39.8
다	자	원	조	다	자	원	조	다	자	원	조
기		타	9.6	기		타	7.9	기		타	11.8
총원조(백만달러)			7884	총원조(백만달러)			28720	총원조(백만달러)			55952

* 자 료 : OECD(1991)

〈附錄 表 2-1〉

協力類型別 基準과 變數¹⁾

기준	요 인			변 수	측진(H) ²⁾ 제한(L)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교 류 연 관 기 준	정 치	정치안정도	정 변	전후쿠데타 발생수	L
			정정불안성	군부통치여부 장기집권여부	L L
		군 비 증	군 비 증	국방예산/정부예산 군인수/인구	L L
		아국과의 정치적관계	수 교 여 부	수교여부	H
			특 별 협 정	특별협정	H
	사회 및 역사	인력파견	군 파 견	아군파견국	H
			교 민 진 출	교 민 수	H
			인 력 파 견	인력파견수	H
			UN군파견	UN군 파견국	H
		인 종	인 종	황색 갈색 흑색 백색	H1 ³⁾ H2 H3 H4
		문 화	한 자 문 화 유 교 문 화	한자통용국 유교문화국	H H
		종 교	종 교	기독교 불교 회교 힌두교 기타	H1 H1 H2 H2 H2
	경 제	시장확대성	구 매 력	인구	H
				GNP	H
				1인당 GNP	H
			교 역 도	해외의존도(무역량/GNP)	H
				상품진출도($\frac{\text{국가수출}}{\text{대개도국 수출}}$)	H
				투자진출도($\frac{\text{국가투자}}{\text{대개도국 투자}}$)	H

기준	요 인			변 수	추진(H) ²⁾ 제한(L)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장확대성	성장성	경제성장율 투자율	H H
			비교우위도	전자/GDP 중공업/GDP 1인당 GNP/아국의 1인당 GNP	L L L
			교역증가성	거리	L
교 류 연 관 기 준	경 제	자원개발성	자원부존도	자원보유현황	H
			아국의 수입의존도	국가수입/대개도국 수입	H
			자원이용 증가성	거리	L
		아국산업 구조조정	기술전이성	노동의 질(교육) 기술격차	H H
			비교우위도	경공업/수출 조립산업/수출	H H
			투 자 성	임금수준 국가투자/대개도국 투자	L H
			투자확대성	건설/GDP	H
			투자관리성	거리	L
			기타투자 환 경	외국자본유치제도	H
			사 회 간 접 자 본	도로율 포장율 항만 통신	H H H H
	원 조 수용성	수원현황	원조의존도	원조액/GNP 원조액/정부예산	L L

기준	요 인			변 수	추진(H) ²⁾ 제한(L)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도주의 기준	보건환경	보건·환경	보건·환경	유아사망율	H
				칼로리섭취율	L
				의료시설	L
				주택보급율	L
				평균수명	L
				상하수도보급율	L
	소득 및 인구	소득 및 인구	소득 및 인구	1인당 GNP	L
				인구증가율	H
외교기준	외교정책	외무부정책	외무부정책	문맹율	H
				취학비율	L
	외교정책	외무부정책	외무부정책	외무부정책 및 외교상황 변화	H, L
		협력단정책	협력단정책	협력단 정책 및 협력상황 변화	H, L

- 註) 1. 협력유형별 기준과 변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과 변수의 향후 개선에 참고가 되리라 봄
2. 추진(H)과 제한(L)은 변수의 값이 클수록 각각 원조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냄
3. 숫자는 우선 서열을 지칭함.

〈附錄 表 3-1〉

交流基準의 要素에 대한 等級

국 가	대외개방도	시장성	교류성	성장성	원조수용성	군사력	교류편리성
모잠비크	8	3.45	1.5	2.00	2.5	3.8	1
이디오피아	3	5.05	2.5	3.00	5	1.9	1
탄자니아	5	4.45	1	4.67	2.5	6.6	1
소말리아	2	3	1.75	4.00	1.5	3.7	1
방글라데시	2	5.7	6.85	5.67	5.5	9	6
라오스	1	2.3	3	5.67	3	3.7	10
말라위	7	2.95	3.5	3.33	2.5	7.6	1
네팔	2	4.2	2.65	6.00	4	8.3	6
차드	7	2.95	1	6.67	2.5	3.2	1
브룬디	2	2.25	0.75	8.00	3	5.9	1
시에라레온	5	2.1	2.5	1.67	4.5	9	1
마다가스카르	3	4	1	2.67	4	7	1
나이지리아	6	6.5	5.075	1.00	8	9	1
우간다	2	4.95	2.75	3.67	5	5.8	1
자이레	6	6.2	2.25	4.33	5.5	6.6	1
말리	4	4.35	1	8.33	2	7.9	1
나이지리아	3	4.1	1.5	1.00	3	10	1
버킨아프리카	2	4.2	1	7.33	4	7.2	1
트위니	2	3.4	1	5.67	4	8.3	1
인도네시아	1	7.2	6.525	8.00	8.5	6.6	6
중화인민공화국	3	7.6	4.675	10.00	8.5	3.2	10
하티니	2	3.8	3	1.00	4.5	8.7	1
케냐	5	6.05	2.75	5.33	3.5	9	1
파키스탄	3	7.15	7.5	8.67	6.5	2.9	6
베네티	4	3.5	1	3.67	2.5	7.6	1
중앙아프리카	2	3.3	3.85	5.00	2	8.3	1
가나	4	5.1	4.425	6.33	3.5	9.7	1
토고	7	2.9	4	2.33	2.5	6.6	1
잠비아	9	4.65	2.25	1.67	4	6.3	1
기니	5	3.85	1	2.67	2	6.3	1
스리랑카	7	5.15	6.675	5.33	4.5	3.8	7
레소토	8	2.3	1	6.67	1.5	7.9	1
인도네시아	6	8.4	10	8.00	7	7.3	10
모리타니아	9	3.8	2.5	3.33	1.5	3.6	1
아프가니스탄	6	4.1	4	2.67	9	3.6	5
부탄	6	1.5	1	9.33	7.5	8.3	6
캄보디아	3	2.05	1	5.67	9	3.6	10
리베리아	7	3	5.5	2.67	8	6.7	1
미얀마	1	5.5	7.65	5.67	9	5.4	10

국	가	대외개방도	시장성	교류성	성장성	원조수용성	군사력	교류편리성
수	단	2	5.95	6.075	4.00	7.5	3.2	1
베	트	남	6	5	1	5.67	9.5	2.4
앙	골	라	7	6.05	2.75	4.00	7	1.9
볼	리	비	아	4	5.8	3.25	1.00	2.5
이	집	트	4	8.05	8.5	6.00	5	1.3
세	네	갈	5	5.3	4.85	6.00	2	7.3
예		멘	6	6.1	6.225	4.00	10	1.6
짐	바	브	웨	5	5.75	2.25	5.33	5.5
필	리	핀	6	7.75	9.425	1.33	7	7.7
코	트	디	아르	7	6.25	3.175	1.67	5
도	미	니	카(공)	7	5.1	6.675	5.67	6
모	로	코	6	7	4.1	6.33	6.5	3
파	푸	아	뉴기니아	9	4.75	5.375	3.67	2.5
온	두	라	스	6	5.05	5.325	3.67	3.5
과	테	말	라	1	5.8	6.675	1.67	5.5
콩		고	8	4.25	1.75	4.33	4.5	4.3
시	리	아	6	6.05	2.5	3.67	7	1
카	메	분	2	6.65	6.85	5.33	4.5	8.3
페		루	3	7.7	4.25	1.33	7	2.3
에	쿠	아	돌	6	6.55	4.575	3.00	7
나	미	비	아	9	4.6	1	1.33	6
파	라	파	이	3	5.65	2.425	2.67	6
에	살	바	돌	4	5.25	2.5	3.33	3
콜	롬	비	아	3	8.2	4.675	5.67	8.5
태		국	8	8.5	9.25	9.00	7	4.7
자	메	이	카	9	4.4	4.35	4.00	5.5
류	니	지	아	9	6.2	2	3.67	5.5
터	어	키	5	8.6	5.5	7.67	8.5	2.7
보	츠	와	나	10	4.9	2.3256	8.00	2.5
요	르	단	6	5.5	5.425	2.00	3	1
파	나	마	3	5.25	7.5	1.33	8	6.8
칠		레	8	7.5	6.425	5.67	8	4.1
코	스	타	리카	8	5.5	6	5.67	3.5
폴	란	드	4	8.55	1	4.33	10	4.8
모	리	셔	스	10	4.55	2.75	9.33	4.5

국 가	대외개방도	시장성	교류성	성장성	원조수용성	군사력	교류편리성
멕시코	3	9.2	5.85	4.67	8.5	9.1	4
아르헨티나	2	9.35	5.675	1.00	8	8.1	4
말레이시아	10	8.2	9.75	6.67	8	2.3	10
알제리	4	9.1	3.875	4.67	8	6.5	1
불가리아	9	7.25	1	7.00	10	3.8	1
레바논	10	1.65	5.25	4.67	8.5	3	1
몽고	10	4.15	1	6.00	9.5	1.3	3
니카라과	5	4.55	1.75	2.00	6	1	4
베네주엘라	6	8.4	3	2.00	9.5	7.4	4
남아프리카	5	9.25	2.325	2.33	10	5.3	1
브라질	1	9.6	6.675	4.67	9.5	9.1	4
헝가리	8	7.4	2.25	3.00	10	5.5	1
우루과이	4	6.25	3.925	1.00	7.5	6.2	4
유고슬라비아	6	8.6	1	2.67	9	4.1	3
가봉	8	5.66	4.5	1.67	3	5.3	1
이란	1	10	8.85	4.67	9	1.3	3
T & T	8	5.85	2	1.00	8.5	8.4	1
포르투갈	9	8.05	3.675	2.67	8	5.1	3
루마니아	7	8.6	1	5.00	10	1.2	2
체코	7	8.65	1	3.33	10	3.4	2

〈附錄 表 3-2〉

BHN基準의 要素에 대한 等級

국 가			보 건	교 육	구 매 력	문 화
말		리	10	9	10	10
키	나	파	9	10	10	10
버		젤	9	10	10	9
니	아	비	10	8	10	10
기	니	소	10	10	9	10
기		아	10	10	10	7
잠	비	아	9	10	9	9
브	런	디	9	10	9	9
지	브	티	9	10	9	9
아	프	가	10	9	9	9
소	말	리	9	10	8	10
감	보	디	9	9	9	9
부		아	9	8	9	10
우	간	탄	8	8	10	9
내		팔	8	9	9	10
중	아	프	9	8	9	9
방	글	라	8	8	9	10
탄	자	니	8	6	10	10
모	리	타	9	9	9	8
차		드	9	9	10	6
배		닌	9	10	8	9
양	폴	라	9	8	9	9
모	잠	비	9	9	8	10
토		고	8	8	10	7
르	완	다	9	7	9	9
이	디	피	9	7	10	7
말	라	위	9	8	10	6
하	이	티	7	7	9	10
라	오	스	9	7	9	8
자	이	레	8	5	10	9
시	에	온	10	10	8	6
적	도	아	9	7	10	6
코	모	로	8	7	9	8
인	디	아	7	7	9	9
수		단	8	9	9	6
세	네	갈	9	8	8	8
리	베	아	8	8	9	6
잠	비	아	8	5	9	9
미	얀	마	6	4	10	9
마	가	카	8	4	10	7
나	이	리	8	8	8	7
예		멘	8	8	7	9
코	트	브	8	7	8	8
P	N	아	8	7	7	9
파	키	스	7	8	7	9
케		냐	7	5	8	9

국 가	보 건	교 육	구 매 력	문 화
집배가사나배케콩과인도말볼스이온몽바알보엘솔도필가가중북튜니이스요사이레페파에터태세리시콜파사벨쿠세	바 소 옴·프린 미 트비 이 프베트 테 말시 도 네로디 리 비 와 질 두 란 나 제 츠 와 살 바도 로 폰 제 미 니카 리 카 이 아 니 지 카 라 리 랑 르 모 바 라 과 쿠 아 인 트빈 비 리 롬 비 우 디아 리 아라비 인 트루시	웨 토나스아남데고라아코브아드트스고투리나르제 카(공)핀봉나국한아과크카단아란논루이돌키국트아아아지아츠바아	7 7 8 5 7 6 5 8 6 6 6 6 8 6 6 6 8 2 5 5 7 6 6 4 5 7 6 4 5	